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743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744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 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제745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은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그리고 의안번호 제738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 감에 의해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조 9,125억 6천 9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조 6,005억 6천 4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3,120억 5백만원임.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835억 9천 8백만원 및 사고이월액 3,585억 4천 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98억 6천 1백만원임.

나. 채권현재액

- 2018회계연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983억원으로 2017회계연도말 3,042억 4백만원 보다 59억 4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다. 채무결산

- 2018회계연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1,691억 4천 4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말 1조 3,261억 1천만원에 비해 1,569억 6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라. 재무회계 결산

- 2018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5조 4,219억 5천 3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말 14조 8,725억 4천만원에 비해 5,494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유동자산 1조 7,047억 3천 2백만원, 투자자산 2,945억 2천만원, 유형자산 13조 4,172억 5천 3백만원, 무형자산 5억 9천 7백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48억 5천 1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1조 9,683억 7천 6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말 2조 1,655억 2천 7백만원에 비해 1,971억 5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유동부채 1,980억 5천 7백만원, 장기차입부채 1조 7,672억 7천 7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 30억 4천 2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순자산은 13조 4,535억 7천 8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말 12조 7,070억 1천 4백만원에 비해 7,465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고정순자산 11조 8,525억 8천 7백만원, 특정순자산 452억 9천 1백만원, 일반순자산 1조 5,556억 9천 9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7,465억 6천 4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3,158억 5천 9백만원에 비하여 4,307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수익 9조 9,532억 8천 2백만원, 비용 9조 2,067억 1천 7백만원임.

2. 검토의견

가. 결산총괄

-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0조 515억 2천 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368억 8천 7백만원을 더한 10조 4,884억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668억 2천 5백만원 (5.7%)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조 4,884억 9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이 10조 9,125억 6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4.0%이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보다 1억 7천만원이 증가된 5억 7천 1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8억 8천 6백만원이 감소된 137억 6천만원임.

[표-1] 세입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수납		징수결정 대비수납	
						증감 (③-①)	수납률 (③/①)	증감 (③-②)	수납률 (③/②)
2018	10,488,409	10,926,900	10,912,569	571	13,760	424,160	104.0	△14,331	99.8
2017	9,921,584	9,966,167	9,951,120	401	14,646	29,535	100.3	△15,048	99.8
2016	8,850,089	9,191,221	9,175,804	291	15,126	325,715	103.7	△15,417	99.8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5%인 9조 6,005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90.7%) 대비 0.8%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전년도 4.4%)인 5,421억 4천 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전년도 4.9%)인 3,457억원임.

[표-2] 세출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①	결산액 ② (②/①)	다음연도 이월액 ③ (③/①)	집행잔액 ④=①-②-③ (④/①)
2018	10,051,522	436,887	10,488,409	9,600,564 (91.5)	542,145 (5.2)	345,700 (3.3)
2017	9,596,337	325,247	9,921,584	8,999,045 (90.7)	436,887 (4.4)	485,653 (4.9)
2016	8,628,272	221,817	8,850,089	8,345,115 (94.3)	325,247 (3.7)	179,728 (2.0)

- 한편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1조 3,120억 5백만원으로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액 5,421억 4천 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2%)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698억 6천 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7.3%)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151억 8천 8백만원보다 2,546억 7천 2백만원(49.4%) 증가함.

나. 세입결산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0%로 전년도(100.3%) 보다 3.7%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0조 9,269억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로 전년도(99.8%)와 비슷한 수준임.

1) 세입재원별 결산

- 세입재원별 결산액은 10조 9,125억 6천 9백만원으로, 이전수입이 88.2%, 자체수입 1.9%, 지방교육채 1.2%, 이월금 8.7%로 구성되어 있음.
-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지난년도 보다 9,614억 4천 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이전수입은 6,847억 2천 8백만원(71.2%) 증

가하였고, 자체수입은 218억 9천 5백만원(2.3%), 지방교육채는 1334억 4천만원(13.9%), 이월금은 1,213억 8천 6백만원(12.6%)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임.

- 이처럼 증가한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6,061억 3천 8백만원 증가한 5조 8,667억 7천 8백만원으로 전체 이전수입의 60.9%를 차지함.

특히 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비법정이전수입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학교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한 목적지정재원의 편성으로 전년도보다 988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함.

- 이러한 예산 규모의 증가는 전년도에 비해 7.7% 높아진 이전수입의 증가가 원인임. 더욱이 2019회계연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이 인상(20.27%→20.46%)됨에 따라 이전수입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¹⁾.

다만, 이전수입의 증가는 징세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한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각종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적정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46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표-3] 전년대비 세입 결산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예산현액 ①	수납액 ②	수납률 (③=②/①)	예산현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A)	수납액 (가=②-B)	비율
합 계	10,488,409	10,912,569	104.0	9,921,584	9,951,120	100.3	961,449	100.0
이 전 수 입	9,238,813	9,624,163	104.2	8,928,734	8,939,435	100.1	684,728	71.2
자 체 수 입	164,081	202,891	123.7	162,161	180,996	111.6	21,895	2.3
지방교육채	133,440	133,440	100.0	0	0	0	133,440	13.9
이월금	952,075	952,075	100.0	830,689	830,689	100.0	121,386	12.6

[표-4] 세입 자원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결산액)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③	구성비율	증감 ③-①	수납률 ③/①	
합 계		10,488,409	10,926,900	10,912,569	100.0	424,160	104.0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 재정보조금	보통교부금	5,049,688	5,049,688	5,049,688	46.3	0	100.0
		특별교부금	187,127	181,679	181,679	1.7	△5,448	97.1
		소 계	5,236,815	5,231,367	5,231,367	48.0	△5,448	99.9
	국 고 보 조 금	35,702	31,913	31,913	0.3	△3,789	89.4	
	특 별 회 계 전 입 금	603,498	603,498	603,498	5.5	0	100.0	
	계	5,876,015	5,866,778	5,866,778	53.8	△9,237	99.8	
자치단체 이전수입	법 정	지 방 교 육 세	1,458,184	1,647,280	1,647,280	15.1	189,096	113.0
		담 배 소 비 세	280,972	281,189	281,189	2.6	217	100.1
		시 도 세	1,230,170	1,442,112	1,442,112	13.2	211,942	117.2
		학 교 용 지 일반회계부담금	9,056	9,056	9,056	0.1	0	100.0
		지 방 교 육 재 정 교부금보전금	87,153	91,326	91,326	0.8	4,173	104.8

		교육급여보조금	12,000	9,473	9,473	0.1	△2,527	78.9
		소계	3,077,535	3,480,436	3,480,436	31.9	402,901	113.1
	비 법 정	광역자치단체	167,344	167,293	167,293	1.5	△51	100.0
		기초자치단체	91,896	92,016	92,016	0.8	120	100.1
		소계	259,230	259,309	259,309	2.4	79	100.0
	계		3,336,765	3,739,745	3,739,745	34.3	402,980	112.1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26,033	17,640	17,640	0.1	△8,393	67.8
자 체 수 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110,028	110,753	109,981	1.0	△47	100.0
		선택적 교육수입	2,445	1,951	1,951	0.0	△494	79.8
	행정활동수입		5,453	5,241	5,229	0.0	△224	95.9
	자산수입	자산임대	475	463	445	0.0	△30	93.7
		자산매각대	25,942	22,472	22,463	0.2	△3,479	86.6
	이자수입		4,108	20,299	20,299	0.2	16,191	494.1
	적립금수입		0	-	-	0	0	-
	금융자산 회수	융자금원금	0	4,424	4,424	0.0	4,424	-
		보증금	0	54	54	0.0	54	-
	기타수입	제재금	1,065	2,099	1,717	0.0	652	161.2
		기타	13,493	35,687	35,665	0.3	22,172	264.3
		과년도	1,072	13,779	663	0.0	△409	61.8
	계		164,081	217,222	202,891	1.9	38,810	123.7
	차입 (지방교육채)		133,440	133,440	133,440	1.2	0	100.0
기타 (전년도이월금)		952,075	952,075	952,075	8.7	0	100.0	

2) 불납결손액

- 2018회계연도의 불납결손액은 5억 7천 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률은 0.3%이고, 전년도 불납결손액 4억 1백만원보다 1억 7천만원(42.3%)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률은 0.1% 증가됨.

- 이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보다 2억 9천 7백만원 증가되고, ‘제재금 수입’ 중 연체료가 2천 2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과년도 수입’의 불납결손율은 해당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2.7%로 전년도 ‘과년도 수입’ 불납결손율 0.6%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이 중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3억 6천 6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더욱이 불납결손이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이 전체 불납결손액의 97.9%(5억 5천 9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시효완성에 따른 상습적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불납결손과 관련하여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한 수업료 미납의 경우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화된 대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변상금과 관련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고지 및 독촉 이외에 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대책이 필요함.

[표-5] 자체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금액 (D=A-B-C)	비율 (D/A)
2018	217,222	202,891	93.4	571	0.3	13,760	6.3
2017	196,043	180,995	92.3	401	0.2	14,646	7.5
2016	195,915	180,498	92.1	291	0.1	15,126	7.7

[표-6] 소관별·사유별 불납결손액

(단위 : 백만원, %)

과목			2018			2017			증 감 (B-D)
			징수 결정액 (A)	불납결손액		징수 결정액 (C)	불납결손액		
				금액(B)	비율 (B/A)		금액 (D)	비율 (D/C)	
자체수입 합계			124,733	571	0.5	196,043	401	0.2	170
교수-학생 활동수입	기본적 교육 수입	수업료	109,791	3	0.0	120,706	5	0.0	△2
		지난년도 수업료	910	149	16.4	1,301	295	22.7	△146
기타수입	제재금 수입	연체료	253	45	17.8	318	23	7.2	22
		과태료	-	0	-	523	1	0.2	△1
	과년도수입		13,779	374	2.7	13,295	77	0.6	297

(단위 : 천원, %)

과목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비고 (결손내역)
	금액	비율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합 계	571,236	100.0	500	5,460	559,305	5,972	
수업료	3,338	0.6			1,044	2,295	
지난년도 수업료	148,909	26.1			147,664	1,245	
연체료	44,901	7.9			44,901		
과년도수입	374,088	65.5	500	5,460	365,696	2,432	위약금 : 272 변상금 : 311,393 과태료 : 62,423

3) 미수납액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3%인 137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146억 4천 6백만원(7.5%) 보다 8억 8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미수납액의 감소는 지난년도 수업료를 포함한 수업료의 미수납액(6억 2천만원)이 전년도 수업료 미수납액(9억 1천 9백만원)보다 32.6%(2억 9천 9백만원) 감소했기 때문임.
-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살펴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80억 2천 6백만원(58.3%), 재산압류중이 42억 1백만원(30.5%), 납부자태만이 7억 7천 2백만원(5.6%), 채무자 거소불명이 2억 3천 7백만원(1.7%), 채무자 징수유예가 1억 4천만원(1.0%), 기타 3억 8천 4백만(2.8%) 등임.
- 이 중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대비 3.6% 증가한 80억 2천 6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8.3%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채무자 실제 재력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채무자 거소불명이나 납부자 태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통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임.

[표-7] 미수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징 결 수 정 액 (A)	수 납 액 (B)	불 결 납 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 내역	
					금 액	미 수 납 율	구 성 비 율		
계	156,649	189,694	175,363	571	13,760	7.25	100		
교수·학습 활동수입	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109,967	110,701	109,929	152	620	0.56	4.51	○ 수업료 : 286 -유치원 : 1 -고등학교 : 285 ○ 지난년도 수업료 : 334 -고등학교 : 334
행정활동 수입	사용료수입	4,644	4,596	4,584	0	12	0.26	0.09	○ 토지사용료 : 12
자산수입	임대료수입	475	463	445	0	18	3.89	0.13	○ 대부료 : 18

	토 지 매 각	25,935	22,392	22,383	0	9	0.04	0.07	○ 공유재산 매각대금 : 9	
기타 수입	제 재 금 수 입	변 상 금	728	1,005	748	0	257	25.57	1.87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257
		위 약 금	22	421	418	0	3	0.71	0.02	○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증가산금 : 3
		연 체 료	126	253	181	45	27	10.67	0.20	○ 변상금연체료 : 24 ○ 토지사용료연체료 : 1 ○ 과태료연체료 : 2
		과 태 료	189	397	347	0	50	12.59	0.36	○ 학원과태료 : 50
	기타수입	13,491	35,687	35,665	0	22	0.06	0.16	○ 소송비용액 : 8 ○ 대부료 및 변상금분납이자 등 : 14	
	과년도수입	1,072	13,779	663	374	12,742	92.47	92.60	○ 토지매각대금 : 9 ○ 대지료 : 170 ○ 변상금 : 6,141 ○ 위약금 : 2,266 ○ 변상금분납이자 : 121 ○ 부당이득금 : 2,946 ○ 과태료 : 476 ○ 소송비용액 등 : 613	

[표-8]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미수납액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 압 류 중		기 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8	13,760	140	1.0	237	1.7	8,026	58.3	772	5.6	4,201	30.5	384	2.8
2017	14,646	391	2.7	123	0.8	8,013	54.7	1,401	9.6	4,167	28.5	551	3.8
증감	△886	△251	△1.7	114	0.9	13	3.6	△629	△4.0	34	1.5	△167	△1.0

다. 세출결산

- 2018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10조 515억 2천 2백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4,368억 8천 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조 4,884억 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조 6,005억 6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가 집행되었는바, 이는 전년도(8조 9,990억 4천 5백만원) 집행률(90.7%)보다 0.8% 증가된 것임.

[표-9]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②	비율 (②/①)	금액③	비율 (③/①)	금액④	비율 (④/①)
2018	10,488,409	9,600,564	91.5	542,145	5.2	345,700	3.3
2017	9,921,584	8,999,045	90.7	436,887	4.4	485,652	4.9
2016	8,850,089	8,345,115	94.3	325,247	3.7	179,727	2.0

○ 정책사업별 결산액을 살펴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이 전체의 93.3%를 차지하는 8조 9,599억 3천만원으로, 이 중 인적자원운용 4조 4,016억 8천 7백만원(45.9%),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8,958억 5천 9백만원(19.7%), 교육복지지원 1조 4,701억 7천 3백만원(15.3%)의 순으로 지출되었음.

[표-10]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액 구성률	전년도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미집행률 ④/①
	정책사업							
	합 계	10,488,409	9,600,564	100.0	8,999,045	542,145	345,700	3.3
	유아및초중등교육	9,787,282	8,959,930	93.3	8,452,488	519,948	307,404	3.1
	인적자원운용	4,548,094	4,401,687	45.9	4,282,092	141	146,266	3.2
	교수·학습활동지원	487,354	462,966	4.8	472,356	8,637	15,751	3.2
	교육복지지원	1,502,930	1,470,173	15.3	1,299,540	138	32,619	2.2
	보건/급식/체육활동	169,160	98,712	1.0	78,493	62,937	7,511	4.4
	학교재정지원관리	1,935,035	1,895,859	19.7	1,795,759		39,176	2.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44,709	630,533	6.6	524,248	448,095	66,081	5.8
	평생·직업교육	27,733	25,706	0.3	24,506	269	1,758	6.3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액	전년도	다음연도	집행잔액	미집행률
	정책사업	①	②	구성률	결산액	이월액③	④=①-②-③	④/①
	평생교육	27,009	25,038	0.3	23,908	269	1,702	6.3
	직업교육	724	668	0.0	598		56	7.7
	교육일반	673,394	614,928	6.4	522,051	21,928	36,538	5.4
	교육행정일반	177,996	137,717	1.4	95,019	14,974	25,305	14.2
	기관운영관리	60,095	50,761	0.5	49,081	6,954	2,380	4.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31,172	426,450	4.5	377,936		4,722	1.1
	예비비 및 기타	4,131	0	0.0	15		4,131	100.0

-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액의 추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볼 경우 ‘교육행정일반’ 사업이 전년 대비 44.9%(426억 9천 8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비용(226억 9백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임.
- 또한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이 전년 대비 25.8%(202억 1천 9백만) 증가된 987억 1천 2백만원으로, 이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비용이 146억 4천9백만원 증가했기 때문임.
- 한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경우 전년도 대비 20.3%(1,062억 8천 6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중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과 ‘학교시설증개축’이 전년도 대비 각각 31.2%(972억 4천 2백만원), 7.6%(48억 1천 7백만원)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임.
- 그러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중 71.1%(4,480억 9천 5백만원)는 공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 공사기간이 필요한 시설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실제공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관행적인 이

월행위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바, 무분별한 이월사업의 남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세출 결산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는 인적자원운용 및 학교 재정지원관리 등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67.6%)에 비해 그 비율은 감소되었으나 매년 지출액이 증가(전년도 대비 2,196억 9천5백만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실적이 저조한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나 소모성 경비의 최소화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표-11]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액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증 감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금액	비율
세출 결산액	9,600,564	100.0	8,999,045	100.0	601,519	6.7
인적자원운용	4,401,687	45.8	4,282,092	47.6	119,595	2.8
교수-학습활동지원	462,966	4.8	472,356	5.2	△9,390	△2.0
교육복지지원	1,470,173	15.3	1,299,540	14.4	170,633	13.1
보건/급식/체육활동	98,712	1.0	78,493	0.9	20,219	25.8
학교재정지원관리	1,895,859	19.7	1,795,759	20.0	100,100	5.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30,533	6.6	524,247	5.8	106,286	20.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9,325	64.9	312,083	59.5	97,242	31.2
학교신증설	152,893	24.2	148,666	28.4	4,227	2.8
학교시설증개축	68,315	10.8	63,498	12.1	4,817	7.6
평생교육	25,038	0.3	23,909	0.3	1,129	4.7
직업교육	668	0.0	598	0.0	70	11.7
교육행정일반	137,717	1.4	95,019	1.1	42,698	44.9
기관운영관리	50,761	0.5	49,081	0.5	1,680	3.4
지방채상환및리소료	426,450	4.4	377,936	4.2	48,514	12.8
예비비 및 기타	-	0.0	15	0.0	△15	△100.0

○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은 인건비가 3조 6,107억 5백만원, 물건비 4,206억 4천 3백만원, 이전지출 1조 1,120억 4천 7백만원, 자산취득 5,933억 4천 5백만원, 상환지출 4,004억 7천 5백만원, 전출금 등 3조 4,499억 5천 4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133억 9천 5백만원임.

[표-12] 세출 성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구성비(%)	
		2018	2017	2018	2017
인 건 비	3,704,497	3,610,705	3,525,694	37.6	39.2
물 건 비	474,444	420,643	344,184	4.4	3.8
이전지출	1,159,705	1,112,047	1,109,952	11.6	12.3
자산취득	1,127,404	593,345	452,955	6.2	5.0
상환지출	404,779	400,475	352,465	4.2	3.9
전출금 등	3,599,500	3,449,954	3,208,547	35.9	35.7
예비비 및 기타	18,080	13,395	5,248	0.1	0.1
합 계	10,488,409	9,600,564	8,999,045	100.0	100.0

1) 불용액(집행잔액)

○ 2018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 10조 4,884억 9백만원의 3.3%인 3,457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856억 5천 2백만원(4.9%)보다 1,399억 5천 2백만원(28.8%) 감소하였음.

- 2018년도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이 257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3,255억 1백만원보다 2,997억 8천만원 감소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3,154억 2

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1,552억 1백만원) 보다 1,602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한편 ‘지급사유 미발생’은 42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49억 2천 1백만원 보다 6억 7천 2백만원 감소하였음.

[표-13] 최근 3년간 불용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18	2017	2016
예산현액	10,488,409	9,921,584	8,850,089
집행잔액	345,700	485,652	179,728
집행잔액율	3.3	4.9	2.0

[표-14] 세출 성질별 불용률 내역

(단위 : 백만원, %)

성 질 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합 계	10,488,409	345,701 (3.3)	25,721 (7.4)	307 (0.1)	4,249 (1.2)	315,423 (91.2)
인건비	3,704,497	93,793	0	0	0	93,793
물건비	474,443	36,354	6,739	279	49	29,287
이전지출	1,159,705	47,589	20	26	40	47,503
자산취득	1,127,404	61,572	14,653	0	0	46,919
상환지출	404,779	4,304	86	0	0	4,218
전출금등	3,599,500	97,405	4,188	2	29	93,186
예비비및기타	18,080	4,685	35	0	4,131	518

- 이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전년대비 92.1%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는 전년도에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계획변경이 3,049억 6천 7백만원(93.7%)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인바, 실질적인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51억 8천 7백만원 증가한 것임.
- 한편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 대비 91.2%로 전년도 32%(1,552억 1백만원)보다 무려 59.2%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 발생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사업부서의 안일한 예산운용이 문제라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 운용에 있어 관행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

2) 이월액

- 2018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5,421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4,368억 8천 7백만) 1,052억 5천 8백만원(24.1%)이 증가하였음.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²⁾).

[표-15]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0,488,409	542,145	308	183,598	891	358,547	5.2
2017	9,921,584	436,887	223	135,315	1,279	301,572	4.4
2016	8,850,089	325,247	104	107,437	671	217,810	3.7

가) 명시이월

○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³⁾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1,835억 9천 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2)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394)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3)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액 대비 이월률은 1.8%로서,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24.1%(1,052억 5천 8백만원) 증가하였음.

[표-16]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건수	명시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금액	비율 (B/A)	금액	증감률
2018	10,488,409	308	183,598	1.8	105,258	24.1
2017	9,921,584	223	135,315	1.4	27,878	25.9
2016	8,850,089	104	107,437	1.2	27,887	35.1

- 명시이월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45.2%(전년도 50.9%), 학교시설증개축 19.1%(24.9%), 학교 신증설 13.5%(4.5%), 학교급식환경개선 10.6%(13.7%) 등 시설사업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88.4%(9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비록 명시이월액 중 시설사업비의 구성비율이 전년도보다 5.6%감소하였다고는 하나, 명시이월액은 349억 5천 6백만원(27.5%)증가함.
- 이처럼 명시이월액 중 사업별 구성률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액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명시이월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습관적인 명시이월을 지양하고 이월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17]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이월액	구성률	이월률
합계	210,324	4,969	183,598	100.0	87.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5,982	565	82,937	45.2	86.4
학교시설증개축	35,842	343	34,983	19.1	97.6
학교신증설	33,205	1,983	24,746	13.5	74.5
학교급식환경개선	19,955	178	19,537	10.6	97.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12,821		12,821	7.0	100.0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1,800		1,500	0.8	83.3
문화예술교육활성화	36		26	0.0	72.2
도서관운영지원	100		100	0.1	100.0
외국어교육활동지원	175		175	0.1	100.0
학력평가관리	71	33	38	0.0	53.1
교육과정운영	140	1	133	0.1	95.3
학생생활지도지원	508	29	475	0.3	93.6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	1,592	2	1,564	0.9	98.2
학교보건관리	50		50	0.0	100.0
학교환경위생관리	3,740	1,813	230	0.1	6.1
직속기관시설관리	1,000	13	987	0.5	98.7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153		1,153	0.6	100.0
시설사업관리	26	1	25	0.0	95.9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128	10	2,118	1.2	99.5

○ 명시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이 177건, 1,529억 1천만원(8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 부족 및 절차 진행 등에 따른 사업추진 중 장애 발생으로 인한 사유가 58건, 219억 4천 6백만원(12.0%), 기타 사유가 73건, 87억 4천 2백만원(4.7%) 등임.

-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명시이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9%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793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107.9%) 증가되었음.
- 또한 사업추진시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은 41건, 129억 7천7백만원에 이르는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의 확보 등 예산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기타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은 LED렌탈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한 연장이 그 원인으로, 이는 「지방계약법」 제32조4)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기간 소요와 대상 물량 중 석면검출 공간을 제외하는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추진시기를 1년 연장함에 따른 것임.
- 이와 같은 이월은 예산의 변경을 통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이월의 남용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명시이월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더욱이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의 경우 전체 177건 중 71건(40.1%)이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의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18] 명시이월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총 계	사업추진 기간부족	사업추진 장애발생	토지매입지연	기타
2018	건 수	308	177	58	-	73
	이월액 (비율)	183,598 (100.0)	152,910 (83.3)	21,946 (12.0)	-	8,742 (4.7)
2017	건 수	223	173	40	1	9
	이월액 (비율)	135,314 (100.0)	73,539 (54.4)	57,672 (42.6)	1,793 (1.3)	2,310 (1.7)
2016	건 수	104	79	19	1	5
	이월액 (비율)	107,437 (100.0)	67,433 (62.8)	23,090 (15.3)	16,391 (21.5)	523 (0.5)

- 한편 2017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2018회계연도에도 5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은 총 3개 사업(3건), 17억 7천 4백 만원으로 이 중 16억 8천 2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이와 같이 명시이월 후 사업비의 50% 이상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는 사업추진의 장애로 인해 발생된 측면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표-19] 명시이월 후 50% 이상 불용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명시이월액	2018년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학교폭력 예방지원	42	19	23 (53.7)	- 학생 자퇴 등으로 인한 멘토링 횟수부족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1,582	3	1,577 (99.7)	- 평창동계올림픽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집행잔액
체험중심과학환경 교육지원	150	68	82 (54.7)	- 서울학생체험관 건립(타당성조사) 사업 후 불용처리

나)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5)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시기 조정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지출을 끝낼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임.
-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전년대비 18.9%인 569억 7천 5백만원 증가한 3,585억 4천 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3.4%임.

5)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표-20] 사고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건수	사고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금액	비율 (B/A)	금액	증감률
2018	10,488,409	891	358,547	3.4	56,975	18.9
2017	9,921,584	1,279	301,572	3.0	83,762	38.5
2016	8,850,089	671	217,810	2.5	75,543	53.1

○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직속기관시설관리, ICT활용교육지원 등 34개의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음.

[표-21] 사고이월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액	구성률	이월률
합계	544,467	475,725	117,066	358,547	100.0	65.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13,282	179,340	38,479	140,751	39.3	66.0
학교신증설	160,565	144,279	41,822	102,456	28.6	63.8
학교시설증개축	84,805	77,737	15,515	62,221	17.4	73.4
학교급식환경개선	61,127	53,951	11,530	42,418	11.8	69.4
직속기관시설관리	4,496	4,354	1,472	2,882	0.8	64.1
ICT활용교육지원	1,754	1,768	20	1,749	0.5	99.7
학생생활지도지원	1,709	1,686	132	1,554	0.4	90.9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780	1,743	792	951	0.3	53.4
학교환경위생관리	3,108	1,976	1,406	570	0.2	18.3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632	530	1	528	0.1	83.5
문화예술교육활성화	3,440	3,116	2,769	347	0.1	10.1
시설사업관리	600	597	112	485	0.1	80.8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85	183	0	183	0.1	98.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34	29	-	29	0.0	85.3
정보보안관리	60	46	-	46	0.0	76.7
공유재산및물품관리	239	199	64	135	0.0	56.5
특색교육과정운영	246	192	62	130	0.0	52.8
교과서지원	187	175	132	43	0.0	23.0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1,570	33	-	33	0.0	2.1
지방공무원임용관리	18	18	-	18	0.0	100.0
학력평가관리	163	134	72	62	0.0	38.0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6	16	-	16	0.0	100.0
교육행정기록물관리	522	99	2	97	0.0	18.6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	85	55	0	54	0.0	63.5
교육복지우선지원	281	280	184	95	0.0	33.8
도서관운영지원	229	176	23	154	0.0	67.2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15	15	-	15	0.0	100.0
학교보건관리	153	133	1	132	0.0	86.3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47	123	103	20	0.0	13.6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29	28	21	7	0.0	24.1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60	50	30	20	0.0	33.3
특수교육운영	30	12	10	3	0.0	10.0
교원연수운영	53	53	25	28	0.0	54.7
교육연구운영지원	575	566	463	104	0.0	18.1
유아교육지원	220	200	101	99	0.0	45.0
직속기관운영	1,896	1,694	1,677	17	0.0	0.9
교원인사관리	155	141	47	94	0.0	60.6

○ 사고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미도래가 263건, 1,730억 3백만원(48.2%),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중 공사추진이 453건, 1,056억 7천 1백만원(29.5%), 추경 등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이 47건, 102억 3천만원(2.9%),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이 73건, 513억 9천만원(14.3%), 사전절차 지연이 49건, 175억 3백만원(4.9%) 등임.

-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고이월의 발생사유는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 사업예산의 추계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이는 사고이월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무리한 사업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한 관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해당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사고 이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22] 사고이월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총 계	계약기간 미도래	추경편성 사업	사전절차 지연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방학중 공사추진	기타
2018	건 수	891	263	47	49	73	453	6
	이월액 (비율)	358,547 (100.0)	173,003 (48.2)	10,230 (2.9)	17,503 (4.9)	51,390 (14.3)	105,671 (29.5)	750 (0.2)
2017	건 수	1,279	360	347	54	59	436	23
	이월액 (비율)	301,572 (100.0)	119,059 (39.5)	57,587 (19.1)	7,316 (2.4)	42,140 (14.0)	73,640 (24.4)	1,830 (0.6)

3) 전용·이체

가)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6)에 따라 예산을 행정과목인

6)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각 세항·목 간의 상호변경을 통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2018회계연도에는 학생생활지도지원 등 총 71건 102억 2천 7백만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는바,

- 이는 예산현액 10조 4,884억 9백만원 대비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482억 9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5%)보다 379억 8천 2백만원(78.8%) 감소한 것임.
- 전용의 발생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과 운영과정에서의 집행방법 변경, 예산 부족분 충당, 국·공립학교 간 예산과목 변경 등임.

[표-23]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발생건수	예산현액 ①	전 용 액②		전용비율 (②/①)
			증	감	
2018	71	10,488,409	10,227	△10,227	0.1
2017	68	9,921,584	48,209	△48,209	0.5
2016	48	8,850,089	12,161	△12,161	0.1

[표-24] 분기별 예산의 '전용'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1	1,394	26	4,200	12	423	22	4,210
2017	12	959	17	26,725	16	1,172	24	19,353
2016	11	9,832	13	619	6	157	18	1,553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인 만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의 전용은 전년도에 비해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각 사업부서에는 예산 전용의 내재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일부 전용의 경우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추계 및 예산편성의 오류를 해소하거나 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전용이 예산편성의 오류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표-25] 예산의 '전용' 사례

(단위 :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	목	전용액		전용일자	사유
			증	감		
		정책·안전기획관	1,338	1,338	2018.10.04	당초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물품 소요 파악 후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위한 물품을 통합하여 구입·배부할 예정이었으나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가입교 340교의 소요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별 필요 물품을 적시에 구매·지원 할 수 있도록 전용
	학생생활지도지원	185	185			
	운영비		185			
	학교회계전출금	185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153	1,153	2018.10.16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KERIS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취득은 위탁용역비가 아니라 유형·무형 자산으로 목을 달리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 따라 전용
	유형자산	542				
	무형자산	611				
	운영비		1,153			
		민주시민교육과	14	14	2018.11.01	탈북학생 학부모는 진로정보와 진로인식이 국내출신 학부모보다 부족하고 안정적 한 국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나, 근로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학부모 진로교육 참여가 어렵고 학교에서도 학부모 진로교육과정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야간을 이용한 탈북학생 학부모 진로상담 및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 등자녀교육지원					
	운영비	14				
	학교회계전출금		14			

다)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⁷⁾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기타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17.11.23.)과 동 시행규칙의 개정(2017.12.18.)에 따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급식시설사업 담당부서 이관(체육건강과→교육시설안전과)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2018.8.27.)에 따른 유치원 평가 업무의 이관(교육연구정보원→유아교육진흥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8회계연도에 9건, 109억 1천 2백만원의 이체가 발생됨.

[표-26]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발생건수	예산현액	이 체 액	
			증	감
2018	9	10,488,409	10,912	△10,912
2017	17	9,921,584	23,670	△23,670
2016	0	8,850,089	0	0

7)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표-27] 실·국간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국		이체액		비고
		증	감	
합계		10,912	△10,912	
평생진로국 체육건강과			△502	2017.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급식시설사업 이관)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10,254	2017.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학교지원과 업무 일부 이관) 2018.1.1. 조직개편(교육공간기획추진단 신설)
	교육공간기획추진단	10,254		
	교육시설안전과	502		
교육연구정보원			△156	2017.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급식시설사업 이관)
유아교육진흥원		156		

[표-28] 서울시교육청 조직 현황

본청(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																			
대 변 인	감 사 관	총 무 과	기획조정실 (5담당관)				교육정책국 (5과)					평생진로교육국 (4과)				교육행정국 (5과)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교육혁신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예산의 이체로 인한 사업 이관 부서는 당초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관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예산의 이체로 인한 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8년도에 신설된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은 업무가 조기에 안착되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신설 1년만에 폐지되고 현재 소관 업무는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와 교육시설안전과로 이관되어 2019회계연도도 예산의 이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은 예산의 이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조직의 신설 폐지에 따른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4) 채권.채무

가) 채권

- 201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도 3,042억 4백만원 대비 59억 4백만원(1.9%)이 감소하였음.
- 채권의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수입을 제외한 토지매각대,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전세자금, 대지료, 수업료, 변상금 등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약 59억 4천 5백만원(20%)이 소멸되었으나, 기타수입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4천 1백만원(0.2%)이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기타수입과 관련된 채권보유액의 증가는 과태료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납이자 미납 등에 따른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채권이 불납 또는 시효완성에 따른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권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수업료는 당해연도 소멸액이 전년도 현재액 대비 63.7%인 5억 8천 5백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2억 8천 5백만원임.

- 이는 전년도 현재액 대비 3억원(32.6%) 감소한 것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채권 발생 감소와 출납폐쇄기한의 단축으로 4분기 수업료 징수기간 중 1월~2월분의 미납액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와 지난년도 수업료에 대한 채납활동을 통해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수업료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29] 채권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중 발생액 (B)			당해연도 중 소멸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D=A+(B-C)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304,204	14,647	289,557	1,507	768	739	7,411	1,654	5,757	298,300	13,761	284,539
토지매각대	2,265	57	2,208	325	9	316	853	48	805	1,737	18	1,719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245	16	229	5	2	3	93	15	78	157	3	154
전세자금	5,340	0	5,340	420	0	420	450	0	450	5,310	0	5,310
대 지 료	239	239	0	31	31	0	69	69	0	201	201	0
수 업 료	919	919	0	285	285	0	585	585	0	619	619	0
변 상 금	6,778	6,778	0	257	257	0	636	636	0	6,399	6,399	0
위 약 금	2,453	2,453	0	30	30	0	188	188	0	2,295	2,295	0
기타 수입	18,685	4,185	14,500	154	154	0	113	113	0	18,726	4,226	14,500
대여장학금	267,280	0	267,280	0	0	0	4,424	0	4,424	262,856	0	262,856

나) 채무

- 201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조 1,691억 4천 4백만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 1조 3,261억 1천만원보다 1,569억 6천 6백만원(11.8%)이 감소하였음

[표-30] 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채무발생액	상환, 소멸액	비교증감(계)	
지방교육채(차입금)	1,326,110	133,440	290,406	△156,966	1,169,144

[표-31] 지방채 발행 및 상환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차입일	차입처/ 차입조건	차입액 (A)	상환액 (B)	차입잔액 (C=A-B =D+E)	유동성장기 차입금 (D)	장기차입금 (E)
						2019년 상환예정	2019년 이후 상환예정
합	계		1,611,718	442,574	1,169,144	165,723	1,003,421
2014 학교신설 등	2014.09.19.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59,514		59,514	59,514	0
09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차환	2014.12.24.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182,629	76,420	106,209	106,209	0
교원명예퇴직	2015.03.26.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256,175	256,175	0	0	0
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015.11.20.	한국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268,763		268,763	0	268,763
교부금차액보전 (누리과정)	2015.12.24.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137,722	75,748	61,974	0	61,974
2015 학교신설	2015.12.29.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152,410	34,231	118,179	0	118,179
교육환경개선	2016.11.23.	한국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217,414		217,414	0	217,414
교부금차액보전	2016.12.30.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152,638		152,638	0	152,638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2016 학교신설	2016.12.30.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51,013		51,013	0	51,013
교육환경개선	2018.12.31.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133,440		133,440	0	133,440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 「지방자치법」 제124조8), 「지방재정법」 제11조와9)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정한 사업에만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정채원임.
- 2018회계연도 중 발생한 지방교육채 1,334억 4천만원은 2017년도 미발행 지방채를 이월하여 2018년도에 발행한 것으로, 기발행된 지방채는 1조 6,117억 1천 8백만원임. 이 중 조기 상환액은 원금 2,866억 7천 2백만원과 이자상환 감액편성분 37억 3천 4백만원 등 총 2,904억 6백만원이며, 2015년도 발행한 교원명예퇴직분 2,561억 7천 5백만원과 같은 해 발행한 학교신설분

8)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9)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1,524억 1천만원 중 342억 3천 1백만원을 상환함.

- 이와 같은 채무의 조기 상환은 교육부가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099, 2018.2.28.) 및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942, 2018.4.4.)에 따른 지방채 조기 상환액 원금 및 이자상환 감액분을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반영한 것임.
- 이처럼 결산상 조기에 전입된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지방회계법」 제19조¹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채는 상환재원의 부담주체가 교육부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나, 보통교부금의 총액 범위 내에서 상환액이 산정되는 바, 상환기간 동안 교육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됨.

[표-32] 2018회계연도 예산 지방채 편성 및 상환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추경 예산	지출액
지방교육채상환	38,931	290,406	325,603
원금상환	0	290,406	290,406
이자상환	38,931	35,197	35,197

10)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5) 공유재산 및 물품

-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조 3,858억 6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649억 9천 2백만원(0.5%)이 증가하였음.
-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은 30조 1,713억 6천 7백만원(현재액 대비 구성률 99.3%)으로 이 중 공용재산이 전년도말 대비 1,675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공용재산은 1천 8백만원 감소하였음. 또한 일반재산은 2,145억 2백만원(현재액 대비 구성률 0.7%)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25억 8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공유재산의 증가는 공용재산의 경우 거여고, 신길중 부지 매입과 건물의 신·증축 및 개·보수에 따른 것이며, 공공용재산은 방학초 공작물(가로등) 대장정리 착오에 의한 재산 변경임. 또한 일반재산의 경우 토지, 건물 및 공작물, 입목중 등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철거에 따른 재산 변동에 의한 것임.

[표-33]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용도별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 중 증감액			2018년도말 현재액
		계	증가	감소	
합 계	30,220,877	164,992	238,735	73,743	30,385,869
행 정 재 산	30,003,786	167,581	230,856	63,275	30,171,367
공용재산	30,002,798	167,599	230,856	63,257	30,170,397
공공용재산	18	-18	0	18	0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재산	970	0	0	0	970
일 반 재 산	217,091	-2,589	7,879	10,468	214,502

- 한편 201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69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대비하여 수량은 317개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8억 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이는 전년도 취득 중 관리전환을 통해 취득한 고가의 네트워크트래픽제어장치 25개가(13억 7천 6백만원) 금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당해연도 물품의 취득 금액은 5억 7천 5백만원 증가한 것임.
- 처분의 경우 수량에서 전년도보다 368개 증가한 2,228개이나, 금액은 26억 감소한 77억 5천 4백만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폐기’의 비중이 수량으로 77.2%, 금액으로 69.5%를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저가 비품을 폐기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및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34] 물품의 증감 및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 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 전환	양여	폐기	기타	소계	
수량	33,892	2,247	33	17	248	2,545	132	32	289	1,721	54	2,228	34,209
금액	87,776	5,273	77	28	1,574	6,953	530	75	699	5,391	1,059	7,754	86,975

라. 성인지결산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회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¹¹⁾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임.
-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교육부 지정사업 12개, 자체추진사업 2개 등 총 29개 사업에 1,553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10조 4,884억 9백만원 대비 1.5%이며, 성인지 사업 집행률은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 1,585억 1천 8백만원 대비 98.0%로 전년도 (96.1%)보다 1.9% 증가하였음.

[표-35] 성인지 결산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성과목표 달성도	
				100%이상	100%미만
29	158,518	155,320	98.0	18	11

1) 사업분류별 검토

- 먼저 성인지 사업을 사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종전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으며, 양성평등정책

11)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사업은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95억 6천 2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783억 6천 4백만원(98.5%)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은 185억 1천 6백만원 증가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51억 2천 2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243억 3백만원(96.7%)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은 동일하고 예산현액은 27억 6천 7백만원 증가하였음.
- 교육부지정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38억 2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519억 7천 8백만원(97.9%)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은 동일하고 예산현액은 52억 5천만원 감소하였음.
- 자체추진사업은 2개 사업(오디세이학교운영, 주민참여예산운영)으로 예산현액 7억 1천 5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6억 7천 5백만원(94.4%)임.

[표-36]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성과목표 달성 사업개수
합 계		29	159,201	155,320	98.0	18
필수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	79,562	78,364	98.5	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25,122	24,303	96.7	3
	교육부지정사업	12	53,802	51,978	97.9	7
선택	자체추진사업	2	715	675	94.4	1

2) 성과목표달성도가 저조한 사업

- 총 29개의 성과목표 중 18개 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여 전체 성과목표 달성율은 62.1%이나, 오디세이학교운영 등 11개 사업은

목표에 미달하였으며, 초등스포츠강사지원 등 7개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달성도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표-37] 성인지 성과목표달성도 100%미만 사업목록

(단위 : %)

사업명	성과목표	2017			2016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오디세이학교운영	여학생비율	50.0	44.5	89.0	-	-	-
영어체험교육지원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50.6	50.0	98.8	50.0	50.2	100.4
초등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33.6	29.0	86.3	33.1	31.4	94.9
중등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34.4	32.5	94.5	35.5	32.2	90.8
문화예술지원	예술강사 여성 비율	85.2	84.5	99.2	85.0	85.1	100.2
영재교육담당 교원전문성 신장	영재교육담당교원연수 여성교원 참여율	68.0	60.5	89.0	66.7	87.2	130.8
마이스터고지원	마이스터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31.0	29.6	95.5	33.8	29.5	87.3
일반고교생직업 교육과정운영지원	일반계고 직업교육과정 여학생 수료율	39.0	36.4	93.4	59.0	36.8	62.4
중등수석교사제운영	여성 수석교사 비율	55.0	54.3	98.7	54.7	53.4	97.7
학교안전망구축	배움터지킴이 여성 비율	5.0	4.6	92.0	5.1	4.7	92.2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89.0	89.8	99.1	88.6	89.9	98.5

○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은 일반고 3학년 재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에서 여학생 수료율을 높이고자 예산현액 3억 8천 6백만원 대비 85.5%인 3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성과목표 달성도가 93.4%로 지난해보다 31% 증가하였음.

- 그러나 동 사업의 달성도가 증가한 것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측정산

식은 동일하나 성과목표를 전년도 59%에서 20% 낮춘 39%로 설정함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성과실적은 0.4% 감소하였음.

- 이는 동 사업에서 진행한 실용음악분야의 직업교육과정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선호가 높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위탁기관의 수료자 수를 성과실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 성과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지난년도보다 2천 9백만원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바,
 -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여학생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이 선호하는 직업교육과정을 발굴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여학생의 산업분야별 마이스터 유망 분야 진출 유도를 목표로 한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도 보다 성과 목표를 낮추었음도 불구하고 각각 87.3%와 75.1%의 달성률을 나타내는 등 전년도보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한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들의 목표 달성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다만 사업별 목표 달성률을 달성하기 위해 수치상 성과목표치를 하향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성과목표치를 하향할 경우 반드시 성과목표 미달성 근거를 파악하여, 성인지예산의 정책목표와 사업의 성과목표가 적정한 성과지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기타 사업별 예산집행 저조 사업

- 세출예산현액 대비 사업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성과목표는 100% 이상 달성한 사업도 2건이 있음.

[표-38] 집행률 80% 이하 달성도 100%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달성도
초등수석교사제운영	88	63	71.8	101.6
주민참여예산운영	125	86	68.9	100.0

- 이와 같은 사업들은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성과계획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예산을 과다 편성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성과계획 수립시 현실 가능한 적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과계획에 맞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마.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¹²⁾에 따라 결산 승인안과 함께 제출

12)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되는 결산서의 구성서류로서, 예산의 성과계획에 따른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 성과관리 사업은 크게 대상사업과 비대상사업으로 구분되는바, 2018회계연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결산액은 2조 8,183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2조 5,044억 2천만원보다 3,139억 5천 2백만원(12.5%) 증가하였고, 비대상사업의 결산액은 6조 7,821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6조 4,946억 2천 4백만원보다 2,875억 6천 7백만원(4.4%) 증가하였음.

[표-39]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감액
		결산액	집행률	결산액	집행률	
합 계(A+B)		9,600,564	91.58	8,999,045	90.70	601,519
성과관리 대상사업	전략목표 I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300,044	94.59	303,113	96.09	△3,069
	전략목표 II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1,010,596	97.56	998,286	97.20	12,310
	전략목표 III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의 참여교육)	88,406	93.96	90,094	92.99	△1,688
	전략목표 IV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1,324,014	68.62	1,039,458	67.53	284,556
	전략목표 V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95,312	80.88	73,469	91.99	21,843
	소계(A)	2,818,372	80.66	2,504,420	81.89	313,952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력운영비	5,482,085	97.15	5,315,709	99.07	166,376
	기본경비	873,656	95.50	800,964	98.93	72,692
	지방채상환	321,449	98.72	273,579	47.25	47,870
	BTL사업비	105,002	99.54	104,358	99.69	644
	예비비 등	0	0.00	15	0.35	△15
	소계(B)	6,782,192	97.04	6,494,625	94.63	287,567

○ 2018회계연도 성과관리 목표는 전략목표수 5개, 성과목표수 22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7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대비 초과달성은 10개(13.1%), 달성은 54개(71.1%)로 전체 84.2%(64개)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달성률은 전년도 달성률과 비교하여 초과달성 및 달성은 1개 증가하였으나, 실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의 증가로 초과달성 및 달성 비율은 4.6% 감소하였음.

[표-40] 성과관리 총괄

(단위 : 개, %)

회계연도	전략 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등급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130%)	미달성 (100% 미만)
2018	5	22	76	10	54	12
			100.0	13.1	71.1	15.8
2017	5	22	71	10	53	8
			100.0	14.1	74.7	11.3

○ 미달성된 성과지표는 12개로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에 따른 교육 활동 전념시간 증가 정도(83.0%), 외국어교원 역량강화(90.8%), 컨설팅 장학 참여비율(95.6%),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비율(93.5%), 초·중학교 무상교과용 도서 재고율(97.8%), 서울학습도움센터 맞춤형학습상담 지원율(79.3%), 교원노사관계 직무연수참여율(97.9%), 학부모회 활동 증가 비율(64.6%), 교육거버넌스 구성원의 사업협력 만족도(98.7%), 학생교육원 시설이용율(98.6%), 공공기관 청렴도(78.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83.0%)임.

○ 이 중 가장 낮은 성과지표는 새롭게 성과 지표로 포함된 ‘학부모회 활동 증가 비율’로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은 64.6%를 나타내고 있음.

- 이처럼 낮은 성과지표를 나타낸 것은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 설정시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의 범위를 학부모 총회, 대의원회만으로 제한함에 따른 것인바¹³⁾, 향후 서울시 교육청은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시 학부모의 학교참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인 각종 활동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41] 미달성 성과지표 내역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세부사업명
		구분	'18년	'17년	
전략목표 I :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I-2. 학교 혁신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제시	4.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에 따른 교육활동 전념 시간 증가 정도(%)	목표	95		
		실적	78.86	신규	
		달성률(%)	83.01		
I-5.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양성	2. 외국어교원 역량강화(개)	목표	109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실적	99	신규	
		달성률(%)	90.83		
전략목표 II :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II-2.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	1. 컨설팅 장학 참여 비율(%)	목표	85	82	유아교육지원
		실적	81.24	84.79	
		달성률(%)	95.58	103.4	
II-3. 맞춤형 교육 복지 실현	1.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비율(%)	목표	13.6	14.2	교육급여지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정보화지원
		실적	12.72	13.37	
		달성률(%)	93.53	94.15	
	3. 초·중학교 무상교과용 도서 재고율(%)	목표	1.8	2.7	교과서지원
		실적	1.84	1.88	
		달성률(%)	97.78	143.62	
II-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천	2. 서울학습도움센터 맞춤형학습상담 지원비율(%)	목표	120	118	학력향상 지원
		실적	95.21	131.49	
		달성률(%)	79.34	111.43	

13) 측정산식 : [('18년 학부모회 활동실적 - '17년 학부모회 활동실적) / '17년 학부모회 활동실적] × 100

전략목표 III :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의 참여교육					
III-2.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학교 운영	2. 교원노사관계 직무연수 참여율 (%)	목표	93.5	93	교직원단체관리
		실적	91.52	93	
		달성률(%)	97.88	100	
III-3. 학부모 학교참여 체계적 지원 및 교육 활동 참여 지원	2. 학부모회 활동 증가 비율(%)	목표	35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실적	22.6	신규	
		달성률(%)	64.57		
III-5.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활동 확대	2. 교육거버넌스 구성원의 사업협력 만족도(%)	목표	74	74	교육복지 우선지원
		실적	73.01	72.85	
		달성률(%)	98.66	98.45	
전략목표 IV :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IV-1.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환경 조성	1. 학생교육원 시설이용률(%)	목표	93.2	93	학생 수련활동 지원
		실적	91.89	85.77	
		달성률(%)	98.59	92.23	
전략목표 V :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V-2. 맑고 깨끗한 조직 풍토 조성	1. 공공기관 청렴도(점(점수))	목표	13	12.8	감사관리
		실적	10.2	13.41	
		달성률(%)	78.46	104.77	
	4.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율(%)	목표	1.0	1.1	재무회계 관리
		실적	0.83	0.88	
		달성률(%)	83	80	

바. 기타 검토 사항

□ [예산담당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결산서 53쪽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증	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9,000,000	162,646	2,029,494	2,029,949	9,162,646	8,742,645	182,961	237,040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2,000,000	42,665		1,596,939	445,716	370,262	0	75,454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000,000			433,010	566,990	530,330	19,749	16,911
학교회계 전출금	6,000,000	119,991	2,029,949		8,149,940	7,842,053	163,212	144,675

- 2018회계연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230건)의 경우 예산현액 91억 6천 3백만원 중 지출액 87억 4천 3백만원과 사고이월 1억 8천 3백만원을 제외한 2억 3천 7백만원(2.6%)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음.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경우 예산안에 반영된 일반사업과는 달리 재정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형평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하는 것인바,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지원하여 운용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락일초중 관련 연구용역과 도림초 도서관 개선공사 등은 지원 받은 예산에 대해 전액 불용되었는바, 이와 같은 예산의 불용은 용역의 중복 및 연도내 사업추진의 불가로 인한 것으로 동 예산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민원실의 비품구입을 위해 전액 사고이월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고이월은 민원실 증축 전 사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이월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이와 같은 사고이월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동 사업에 따른 지원시 사고이월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이월이 예산확보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4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중 전액 불용 또는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 일자	원인행위 월일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이월액 (이월률)	세부사유
(가)가락일초중 통합운영학교의 체육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	22	03-06	-	0	22 (100.0)	0	서울시에서 용역 진행
흥인초 보건실 현대화 사업	50	02-05	-	0	50 (100.0)		추경에 예산 반영으로 반납
한산초 체육관 부속실 신축공사	50	02-05	-	0	50 (100.0)		추가재원 미확보로 반납
도림초 도서관 개선공사	30	04-27	-	0	30 (100.0)		집행불가로 반납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 환경개선	20	10-05	10-05	0	0	20 (100.0)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완료 후 비품구입을 위해 이월

[표-43]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72	3,222	56	2,017	34	1,182	68	2,572
2017	42	1,668	40	1,409	54	1,709	107	3,243

□ [노사협력담당관] 계약제직원인건비 - 결산서 345쪽,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전용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 사유
		증	감		
계약제직원인건비	2,595,360	132,000	132,000	01-29	2017년 장애인고용현황 산출 결과 예산편성추정치(2.7%)에 미달하여(2.62%) 고용부담금 납부금액 부족분이 발생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학교회계전출금)에서 전용
운영비	363,360	132,000			
학교회계전출금	2,232,000		132,000		

- 2018회계연도 계약제직원인건비의 경우 예산현액 25억 9천 5백만원 중 학교회계전출금 22억 3천 2백만원 가운데 1억 3천 2백만원을 운영비로 전용하였음.
- 이와 같은 전용은 2017년분 장애인고용현황 산출 결과 고용률이 2.62%로 나타났는바, 2018년 예산 편성시 추계한 장애인고용현황 2.7%와 0.08%차이가 발생하여 그 차이만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14)에 따

14)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예산 편성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장애인고용률 목표비율을 정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을 산정하고 있음.
- 이처럼 자체적으로 법정고용률 보다 낮은 장애인고용비율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인고용비율은 예산 추계시 설정한 목표 비율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따라 부족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예산의 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은 예산 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부족한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3천 2백만원(본예산 3억 6천 3백만원의 36.3%)을 전용을 통해 증액한바, 이와 같은 전용을 통한 예산의 확보는 단일한 예산의 편성과 함께 전용을 통해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의 추계와 실제 지출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용을 통한 관행적인 사업비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시 미선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15) 직종별, 유형별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고 채용을 확대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4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연도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인원	장애인 수	미달인원	고용률 ¹⁶⁾ (법정고용률)	고용부담금 납부총액
2017년 (2016년분)	19,030명	513명	516명	0명	2.71% (2.7%)	209,273천원
2018년 (2017년분)	19,523명	566명	517명	49명	2.65% (2.9%)	480,461천원
2019년 (2018년분)	19,768명	573명	528명	45명	2.67% (2.9%)	583,906천원

[표-45] 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사업항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363,360	132,000	495,360	480,461	14,899

[표-46] 2017년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채용 미선발 현황

구분	장애인 채용 정원 및 현황					미채용시 사유
	직종별	채용예정인원 (A)	응시인원 (B)	경쟁률 (B:A)	채용인원	
동부	전문상담사	1	1	1:1	0	면접심사 결시

15) 「'말로만 장애인 고용'...교육청도 '차별'·'편견'」 뉴스투데이, 2019. 4. 20. 「자격증 갖춘 장애인 조리사 '학교급식' 탈락한 사연」 노컷뉴스, 2019. 4. 19.

16) 고용률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산정하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실제고용비율과 차 발생

남부	조리원	2	1	0.5:1	0	면접 결격사유(평정점수 미달)
	유치원 교육실무사	1	1	1:1	0	면접 결격사유(평정점수 미달)
	조리원	1	1	1:1	0	면접 결격사유(평정점수 미달)
강동 송파	교무행정 지원사	1	1	1:1	0	면접시험불합격
강서 양천	전문상담사	1	1	1:1	0	면접심사 불합격
	교육실무사	1	1	1:1	0	면접심사 불합격
	사서	1	1	1:1	0	면접심사 불합격
강서 양천	조리원	3	2	2:3	0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서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동작 관악	교육실무사	1	1	1:1	0	합격자 없음(2점이하 평정개수 2개이상)
	교무행정 실무사	1	9	9:1	0	합격자 없음 (결시 및 2점이하 평정개수 2개이상)
성동 광진	조리원	1	1	1:1	0	면접시험 불합격
성북 강북	교육실무사	1	4	4:1	0	중증청각장애2급, 경증신장장애5급, 경증지체장애5급, 경증지체장애3급(4명중 1명은 서류심사 탈락, 3명은 면접심사 탈락)

□ [교육혁신과] 학교 교육용 PC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 결산서 774쪽

(단위: 천원)

세부 사업	사업명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ICT활용교육지원			1,696,400	5,195	0	1,690,000	1,240
	학교정보화기기 보급및관리 (특별교부금)		1,696,400	5,195	0	1,690,000	1,240
	운영비		296,400	5,195	0	290,000	1,240
	유형자산		1,400,000	0	0	1,400,000	0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1,570,000	0	1,270,000	32,600	267,400
	학교정보화기기 보급및관리 (자체예산)		1,570,000	0	1,270,000	32,600	267,400
	유형자산		1,570,000	0	1,270,000	32,600	267,400

- 2018년회계연도 “ICT활용교육지원(특별교부금)”의 경우 예산현액 16억 9천 6백만원 중 5백만원이 지출되고 16억 9천만원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되었음.
- 2018년회계연도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15억 7천만원 중 지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12억 7천만원은 명시이월, 3천 2백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6천 7백만원 발생하였음.
- “학교 교육용 PC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은 SW교육 필수화에 따라 고품질 교육용 PC 서버를 제공하여 개별 학교의 노후 PC를 매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기의 “ICT활용교육지원”과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로 예산이 편성됨.
- 먼저 “ICT활용교육지원”은 “학교 교육용 PC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2017년 11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7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연도 말 교부로 인해 2017년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되었으며,

2018회계연도에는 이와 별도로 “학교 교육용 PC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자체 사업 예산으로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에 18억원이 편성됨.
- 그러나 두 사업 모두 대부분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었는바, 이는 개별 학교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데 개별 학교에 서버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공간 확보를 위한 추가 공사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 특히, 당초 클라우드 시스템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¹⁷⁾, 90개교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약 19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5백만원만 지출한 상황임.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0월 30일 교육연수원에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 설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의 18억원 중 2억 3천만원을 건설비로 전용함.

그러나 이 전용된 건설비 2억 3천만원도 공사 기간의 장기화 문제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음.

[표-47]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전용 현황(결산서 351쪽)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용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사유
		증	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및관리	1,800,000	230,000	230,000	-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에 따라 학교 교육PC 클라우드(VDI)시스템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이에 따라 학교 교육용 PC 클라우드(VDI)시스템 설치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공간(교육연수원)에 학교 교육용PC 클라우드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건설비로 전용
건설비	0	230,000	0	2018.10.30	
유형자산	1,800,000	0	230,000		

-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버 설치 공간의 마련이 선결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과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17)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2018). 학교 컴퓨터교육실 교육용 PC 클라우드(VDI)시스템 구축 시범 확대 계획(안).

□ [교육혁신과] 교과서지원 - 결산서 77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전년도 집행잔액률
교과서지원	52,207,255	51,439,464	724,677	1.4	2.2
학교회계전출금	1,105,769	539,954	565,814	51.2	65.4

- 2018회계연도 “교과서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522억 7백만원 중 514억 3천 9백만원이 지출되고 7억 2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이 1.4%임.

그런데 이 중 학교회계전출금의 경우, 예산현액 11억 6백만원 중 5억 4천만원이 지출되고 5억 6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51.2%에 달하고 있음.

- 동 사업의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초·중학교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비의 집행잔액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초·중학교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비는 공립 초등학교 153,375천원, 사립 초등학교 6,559천원, 공립 중학교 399,160천원, 사립 중학교 152,971천원 등 총 712,065천원 임.

그러나 실제 교과서 지원금으로 지출된 예산은 공립 초등학교 25,935천원, 사립 초등학교 89천원, 공립 중학교 6,415천원, 사립 중학교 6,930천원 등 총 39,369천원으로, 672,696천원의 오차를 보이고 있어 그 결과 불용률은 평균 73.4%에 이르고 있음.

[표-48] 초·중학교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초등학교	공립	153,375	25,935	127,440	83.1
	사립	6,559	89	6,469	98.6
중학교	공립	399,160	6,415	242,744	60.8
	사립	152,971	6,930	146,040	95.5

- 이러한 결과는 개별 학교가 재학생 대상 교과서 주문 시 전입생 교과서를 여분으로 추가 주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18)

개별 학교가 재학생 교과서 구입 시 추가적으로 전입생용 교과서를 미리 신청함으로써 교육청이 예측하는 전입생 수와 실제 학교에서 교과서 구입비를 신청하는 전입생 수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비의 불용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개별 학교가 재학생 교과서 구입 시 전입생 교과서를 미리 구입할 수 없도록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비와 재학생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동일한 시기에 교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매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불용의 답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18)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구입비는 재학생 교과서의 경우 '운영비'로 1월에 교육지원청에 교부되고,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비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3~4월경에 학교로 교부되고 있음.

□ [교육혁신과] 문화예술지원 - 결산서 775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문화예술지원	1,048,222	641,248	272,996	133,977	12.8
운영비	1,048,222	641,248	272,996	133,977	12.8

- 2018회계연도의 “문화예술지원(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 10억 4천 8백만원 중 6억 4천 1백만원이 지출되고 2억 7천 3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 3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2.8%임.
-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희악기 수리 및 렌탈,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문화예술거점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임.
- 그리고 동 사업 중 유희악기 렌탈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원하는 학교에 악기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시범운영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에서 대여할 악기를 선정하고 위탁기관에서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시범운영 당시, 위탁기관과의 계약을 2018년 9월에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1년으로 함으로써 동 사업예산의 사고이월의 발생을 부득이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임¹⁹⁾.

19) 서울시교육청은 2019회계연도에도 악기 대여 위탁기관과 2019년 9월부터 10개월간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공유경제 구축차원에서 악기 대여 사업을 2019년에 확대·운영하여 2020년 이후까지 지속할 계획이므로 2019회계연도에도 결국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기관과의 계약체결 시기를 변경하거나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복적인 사고이월의 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교육혁신과] ICT활용교육지원 - 결산서 842쪽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ICT활용교육지원	2,000,000 (특별교부금)	787,017 (자체예산)	307,121	787,017	1,690,000

- “ICT활용교육지원”의 경우 2017회계연도에 20억원이 명시이월되고, 7억 8천 7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018회계연도에 명시이월액의 지출액은 3억 7백만원, 사고이월액의 지출액은 7억 8천 7백만원으로 2019회계연도에 재이월된 예산은 16억 9천만원임.
- 이 중 2017년에 명시이월된 20억원은 “ICT활용교육지원” 사업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이었으며 사고이월된 7억 8천 7천만원은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음.

- 일반적으로 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이 있을 경우, 특별교부금 예산이 먼저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ICT활용교육지원” 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사고이월된 7억 8천 7천만원이 먼저 집행된 것임.

이러한 예산집행은 일반적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의 경우 다시 이월할 수 없지만 명시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로 한 번 더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예산 심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서 다음해에 예산을 한 번 더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사고이월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²⁰⁾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예산 집행 방식은 사고이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전 연도에 이월된 예산은 반드시 해당 연도 내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할 경우 이월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 - 결산서 352쪽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용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사유
		증	감(△)		
방과후학교운영	75,350,417	107,000	107,000	-	당초 「방과후돌봄연계강화」 사업은 단위학교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성격 상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강화를 위함 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효과적으로 판단되어 관련 예산을 전용
운영비	161,197	107,000	-	05.15	
학교회계 전출금	75,189,220	-	107,000		

- 2018회계연도 “방과후학교운영”의 운영비 예산액은 1억 6천 1백만원,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액은 751억 8천 9백만원으로 2018년 5월 15일자로 학교회계전출금 1억 7백만원이 운영비로 전용됨.

-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운영, 방과후돌봄연계강화 사업,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돌봄연계강화’ 사업을 단위학교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한 것임.

- 최근 “마을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사업”이 방과후돌봄사업의 현 추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초부터 “방과후돌봄연계강화” 사업은 단위학교보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방과후돌봄’ 사업처럼 중·장기적이고 대규모 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방과후돌봄’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고민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기본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중등교육과] 특색교육과정운영 - 결산서 353쪽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용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사유
		증	감(△)		
특색교육과정운영	20,582,549	45,000	45,000	-	대입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새 로 개편된 대입제 도를 반영하기 위 한 원격 연수 컨 텐츠 개발 등을 위한 전용
운영비	950,533	45,000	0	2018.10.30	
학교회계전출금	19,632,016	0	45,000		

- 2018회계연도 “특색교육과정운영”의 운영비 예산액은 9억 5천만원,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액은 196억 3천 2백만으로 2018년 10월 30일자로 학교회계전출금 4천 5백만원이 운영비로 전용됨.
- “특색교육과정운영” 사업은 개별 학교에서 특성화된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0월 30일에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적용 및 대입제도 전면개편과 관련하여 교사 대상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격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는 2016년에 이미 안내가 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과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교사들의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고려했다면, 예산편성 당시에 기존의 연수 콘텐츠 개발비를 편성했어야 함.

- 더욱이 2018년 8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굳이 다른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이를 위해 전용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던지도 의문임.

[표-49]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시기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
중학교	-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	1학년	2학년	3학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 결산서 355쪽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용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사유
		증	감(△)		
다문화및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4,561,406	13,500	13,500	-	학교에서는 탈북학부모 진로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탈북 학부

운영비	694,450	13,500	0	11. 01	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전용
학교회계전출금	3,866,956	0	13,500		

- 2018회계연도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 지원” 의 운영비 예산액은 6억 9천 4백만원, 학교회계전출금은 38억 6천 7백만원으로 2018년 11월 1일자로 학교회계전출금 1천 3백만원이 운영비로 전용됨.
-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 지원” 사업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진학, 사회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탈북학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하였음.
- 그리고 전용 사유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편성 당시에는 ‘개별 학교’에서 탈북학부모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당해연도 하반기에 이르러 탈북학부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직접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 그 원인임.
- 그러나 탈북학부모 진로교육 과정 개설 변경에 있어 당초에 학교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이 연도 중에 교육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산 전용을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합당한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 미흡과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을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계획 수립시 면밀한 사전검토와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하는 한편, 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용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 및 학부모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대상자들의 특성과 실제로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 결산서 105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10,652,338	9,657,313	14,900	980,124	9.2
운영비	158,313	105,098	14,900	38,314	24.2
민간이전	10,434,575	9,500,929	-	933,645	8.9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106억 5천 2백만원 중 96억 5천 7백만원이 지출되고, 9억 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이 9.2%임.

이 중 ‘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5천 8백만원 중 1억 5백만원이 지출되고 1천 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24.2%에 해당하는 3천 8백만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이전’은 예산현액 104억 3천 4백만원 중 95억 원이 지출되고 9억 3천 3백만원이 불용됨으로써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운영비’의 주된 불용 사유는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교습비 조정 신청

학원 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17년도 138개원 → '18년도 55개원),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도별 학원 교습비 조정 신청 추세와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전년도 상황만을 고려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²¹⁾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 한편 '민간이전'의 경우에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에 학습비(장학금) 지원과 특히 재정부족 시설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 교직원 변동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지원비의 집행잔액으로,

당초 2018년 예산편성 당시 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 학생을 20,764명으로 예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2018년도에 지원된 학생은 18,164명으로 2,600명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

[표-50] 2018년도 학습비 지원대상 학생수 현황²²⁾

구 분	본예산 지원대상 학생수(A)	실제 지원대상 학생수(B)	증감(B-A)
합 계	20,764명	18,164명	△2,600
초등과정	5,600명	4,544명	△1,056
중등과정	9,600명	9,532명	△68
고등과정	5,564명	4,088명	△1,476

- 이처럼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2018년 예산 편성 당시 학생수 변동 등에 대한 통계 자료 분석 및 사회적 추이와 동향을

21) 교습비 조정 회계 검토비 및 참석수당: '17년 본예산 25,000천원 → '18년 본예산 48,400천원 (증액: 23,400천원)

22) 학습비 지원 대상 학생수 : 1~4분기 지원대상 학생수의 합계
 - 초·중등과정 : 초·중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고등과정 : 특성화고형태 평생교육시설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불용액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추계시 학생수 감소 등 사회적 추이와 동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지원 - 결산서 743쪽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도서관운영지원	100,000	-	100,000	-
개포도서관건립운영 통합계획연구용역	100,000	-	100,000	-

- 2018회계연도 “개포도서관건립운영통합계획연구용역”의 경우 예산현액 1억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음.
- 개포도서관 건립 사업은 개관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의 새로운 공간구성 및 서비스 운영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임.
- 서울시교육청은 개포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지자체(강남구) 재원 미확보에 따른 “재검토” 통보 결정으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울시 및 강남구와 재원 분담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개포도서관 건립 추진에 있어 중앙재정투자심사, 재원

분담 방안 등을 확정된 후에 그 내용을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충분히 이행·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편성에 앞서 교육부, 서울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자원 분담 등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학생생활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 - 결산서 110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대안교육운영지원	6,313,443	5,796,776	-	516,666	8.2
여비	6,460	2,200	-	4,259	65.9
연구개발비	205,000	990	-	204,010	99.5
유형자산	50,000	9,908	-	40,091	80.1

- 2018회계연도 “대안교육운영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63억 1천 3백만원 중 57억 9천 6백만원이 지출되고, 5억 1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율이 8.2%임.

이 중 ‘연구개발비’는 예산현액 2억 5백만원 중 99만원이 지출되고 99.5%에 해당하는 2억 4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유형자산’은 예산현액 5천만원 중 1천만원이 지출되고 4천만원이 불용됨으로써 “대안교육운영지원”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대안교육운영지원”의 ‘연구개발비’와 ‘유형자산’은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AEIS)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8회계연도 본예산에 한시적으로 신설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프로그램개발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공개입찰 결과 유찰(1회)되어 당해연도 사업을 종료하고 불용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AEIS) 고도화사업 기본계획(2018.1월)을 수립하여 2018년 8월까지 개발 및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부서에서는 기본계획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최초 용역 계약을 2018.11.15.일에 의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업체 무응찰로 유찰(1회)됨으로써 과다한 불용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 한편 ‘여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6백만원 중 2백만원이 지출되고 4백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65.9%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2017회계연도 결산시에도 동 사업에서 47.3%에 해당하는 높은 불용율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 편성한 것이 원임임.

[표-51]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 ‘여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2018년(B)	6,460	2,200	4,259	65.9
2017년(A)	4,800	2,530	2,270	47.3
증감(B-A)	1,660	△330	1,989	

-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면밀한 검토 없이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이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 결산서 117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특성화고장학금지원	40,036,169	38,572,666	-	1,463,502	3.6

- 2018회계연도 “특성화고장학금지원”은 예산현액 4백억 3천 6백만원 중 385억 7천 2백만원이 지출되고, 14억 6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특성화고장학금지원”은 직업교육에 재능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게²³⁾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교육부 대응 투자(교육청 80%, 교육부 20%)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6%으로 낮으나 예산규모가 큰 사업으로 불용액이 14억 6천 3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 감소와 입학 후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 등 학생수 변동에 따른 특성화고장학금 지원금의 집행잔액으로,

당초 2018년 예산편성 당시 특성화고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을 28,514명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2018년도에 지원된 학생은 26,159명으로 2,355명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

23) 지원제외 : 법정면제.지원자, 직장의 학비지원 대상자, 기타 외부지원자
지원금액 : 1인당 입학금 14,100원, 수업료 1,450,800원

[표-52] 특성화고장학금 지원대상 학생수

구 분	본예산 지원대상 학생수(A)	실제 지원 학생수(B)	증감(B-A)
2018년도	28,514명	26,159명	2,355명
2017년도	29,346명	27,915명	1,431명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 감소 및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 사업을 감액 편성 조치하였고, 2018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2018.3.1. 교육통계 학생수 기준(43,962명) 장학금 지원 대상 비율의 62%를 적용하여 장학금 지원 예산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53] 특성화고장학금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2018년	40,036,169	38,572,666	1,463,502	3.6
2017년	43,895,727	43,567,454	328,273	0.7
2016년	42,712,862	42,538,557	174,305	0.4
2015년	38,088,603	37,593,354	495,249	1.3

- 이와 관련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사회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고 진학 집중,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호도 감소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도 예산 편성 당시의 지원대상자수와 실제 지원대상자수 간의 오차가 2천명 이상(2,355명) 발생하였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추계 시 학생수 감소 등 사회적 추이와 동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 결산서 367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학교환경위생관리 (예비비)	52,980	46,153	-	6,827	12.8

- 2018회계연도 “학교환경위생관리”의 경우 예산현액 5천 2백만원 중 4천 6백만원이 지출되고,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학교환경위생관리(예비비)”는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결과(초·중·고 학교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실태) 일부 학교에서 무석면 구역 내 석면 검출, 석면조사 누락, 석면지도 작성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에 대한 석면지도 오류 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석면 실태조사 결과 146개 학교에서 석면 검출이 확인되어 120교는 최초(2013년) 조사업체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초 조사업체가 폐업된 26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석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과거 서울시교육청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²⁴⁾ 따라 2013년 8월부터 2014년까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4.29.)

석면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석면지도를 제작하였으나 2018년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결과 석면지도 오류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 것임.

[표-54] 석면 실태조사 대상 학교 및 조사 결과(2013년~2014년)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합계
조사대상 ²⁵⁾		681	524	356	259	26	5	1,851
조사 결과	석면	352	469	318	230	14	4	1,387
	무석면	329	55	38	29	12	1	464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무석면 학교 석면 재조사”를 위해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28억원을 편성하여 학교 건축물 석면 최초 조사 결과 나타난 무석면 학교 및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통해 무석면 건축물로 발표된 학교 중 740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표-55] 무석면 학교 재조사 대상 학교²⁶⁾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합계
무석면 학교	535	200	129	123	18	11	1,016
조사제외교	176	47	16	27	1	9	276
조사대상교	359	153	113	96	17	2	740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석면 실태조사는 당시 최초 조사라는 시행착

25) 제외대상 : 2009년 이후 착공신고 학교, 병설유치원(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조사), 휴.폐원 유치원, 국립 및 재정결함 보조금 미지원교(학교 자체조사)

26) 가. 조사제외학교: 2009년 1. 1. 이후 착공신고 학교(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31조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나.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조사(단, 병설유치원만 무석면 건축물인 경우는 석면건축물인 초등학교와 함께 2020년 재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다. 국립 및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석면조사

오를 인정하더라도 부실한 실태조사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최초의 석면 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체육건강과] 학교보건관리(당뇨학생건강관리지원) - 결산서 743쪽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학교보건관리 (당뇨학생건강관리지원)	57,400	80	50,000	7,320

- 2018회계연도 “당뇨학생건강관리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5천 7백만원 중 5천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음.
- “당뇨학생건강관리지원”은 당뇨학생 지원 체계 구축 및 생애주기별 당뇨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포괄적인 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전체학교에 당뇨학생 지도 및 보건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의 소아당뇨 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작된(2018.11월말)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자료를 개발할 계획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5천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당초부터 보건복지부의 소아당뇨 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작된(2018.11월말) 이후에 교육자료를 개발·보급

할 계획이었다면 교육자료 개발 예산을 2019회계연도에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에 예산을 미리 편성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것임.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예산과 정책이 그 목적과 절차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서울시교육청은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집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월제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 - 결산서 744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학교환경위생관리 (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	30,000	-	30,000	-
유형자산				

- 2018회계연도 “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의 경우 ‘유형자산’ 예산현액 3천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음.
- “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에 기인한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 검사를 통해 기준 초과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임.
- 서울시교육청은 2018회계연도 본예산에 간이측정기기(XRF측정기)

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간이측정기기 추정가격 4천만원)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간이측정기기 구입에 부족한 예산을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여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측정기기 구입비 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부족한 예산 1천만원을 2019회계연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음.
- 이월은 예산의 변경을 통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체육건강과] 학교흡연예방교육(국고보조금) - 결산서 780쪽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학교흡연예방교육 (국고보조금)	542,491	243,229	132,230	167,031

- 2018회계연도 “학교흡연예방교육(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현액 5억 4천 2백만원 중 2억 4천 3백만원이 지출되고 1억 3천 2백만원이 사고이월되어 1억 6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금연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설치 기본계획”을 2018.11.23.에 수립하였고, 용역계약을 연도말인 2018.12.19. 체결함으로써 회계연도 내 용역비

를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게 되었음.

- “금연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설치”는 2018회계연도 본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에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이월 한 것으로 사고이월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안일한 사업집행과 사고이월의 남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교육시설안전과] 안전관리(안전점검) - 결산서 782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집행잔액 (잔액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9,059,633	15,834,184 (16.0)	33,375,470 (33.7)	10,964,544 (11.1)
안전관리(안전점검)	2,416,824	1,635,360	238,966	542,498
운영비	2,416,824	1,635,360 (67.7)	238,966 (9.9)	542,498 (22.4)

- 2018회계연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990억 5천 9백만원 중 158억 3천 4백만원(16.0%)이 지출되고, 109억 6천 4백만원(11.1%)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333억 7천 5백만원(33.7%)이 사고이월되었음.
- 이 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경우 예산현액 24억 1천 7백만원 중 16억 3천 5백만원(67.7%)이 지출되고, 5억 4천 3백만원(22.4%)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2억 3천 9백만원(9.9%)은 사고이월되었음.

- 이와 같은 사고이월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예비비 24억 1천 7백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산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해당연도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해 발생된 것임.
- 더욱이 해당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1.17.개정, 2018.1.18.시행)에 따라 학교 등 교육시설물이 제3종 시설물에 포함되었는바²⁷⁾,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²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사항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관련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던 것임.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사업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리 인지하였더라면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고, 사업 추진에 철저한 집행계획과 관리가 있었다면 사업비의 사고이월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바,
- 서울시교육청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업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예비비로 편성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유인 이월제도가 예비비에서도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27)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의 교육시설

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2018. 1. 18., 전부개정]

제98조(지정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별표 3] 제3종시설물의 범위

2. 건축분야

구분	대상범위
공동주택 외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이하 생략)

□ [학교지원과] 학교신증설 - 결산서 128쪽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689,780	2,530,431	223,646	935,704
학교신증설	3,689,780	2,530,431	223,646	935,704
보전금	223,314	139,300	0	94,014
건설비	3,456,466	2,391,131	223,646	841,690

- 2018회계연도 학교신증설의 경우 예산현액 36억 9천만원 중 25억 3천만원이 지출(68.6%)되고, 이 중 이월된 2억 2천 4백만원 (6.1%)을 제외한 9억 3천 6백만원(25.4%)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이와 같은 집행잔액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산빛초의 학교 신설에 대해 '재검토' 결과²⁹⁾가 나오에 따라 학교신설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설계공모 보상금 9천 4백만원과 설계비 8억 4천 2백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임.
- 최초 가칭)산빛초는 2020년 송파구 장지동에 신설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시 재검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전절차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개교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 예산에 동 학교에 대한 설계비 등을 반영한데 따른 것임.
- 그러나 산빛초는 예산배정후 별도의 절차 이행 없이 사업추진이 이루

29) 2017년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알림,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4592(2017.8.23.)

사업명	결과	부대의견
산빛초	재검토	학교 설립시기 조정

어지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학교신설을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불용시킨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안일한 사업 추진이 원인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신설과 관련한 예산 편성시 반드시 사전 절차 이행 후 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예산 미확보에 따른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 결산서 746쪽~771쪽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중 냉난방기 개선 공사 등 총 21건은 예산현액 45억 9천 9백만원 중 6천 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98.3%인 45억 2천만원이 명시이월됨.
- 이와 같은 명시이월은 동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시 석면 훼손에 따른 석면잔재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추진되어야 할 석면의 제거 및 해체가 대상 물량의 파악 오류와 석면 제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제때 이루어질 수 없어 발생한 것임.
- 석면 제거 및 해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도에 실시한 석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석면제거 및 해체를 위해 예산을 매년 단계적으로 편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2017년 석면제거 사업 실시 후 해당 대상학교를 무석면학교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4개의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어 개교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는바,

이에 따라 기존의 석면이 포함된 부분만을 철거하는 석면 해체·제거방식을 석면이 포함된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³⁰⁾.

[표-56] 학교 석면 해체·제거 방식

기존 방식	개선 방식
냉난방 개선공사가 계획된 실 또는 층에 석면텍스가 간섭하는 곳만 공사	냉난방 개선공사가 예정된 건물 전체 또는 학교 내의 석면텍스 전면 철거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2018회계연도 석면제거 및 해체를 위한 예산 편성 당시 1실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석면 제거 및 해체 비용이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 1실당 1천 3백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부족하게 됨.
- 이처럼 냉난방기 개선 공사 등 총 21건은 사업 추진시 선행되어야 할 석면 제거 및 해체가 기존 자료의 부정확성과 예산 추계의 오류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명시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에 석면제거사업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도 더불어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했다³¹⁾ 동 사업들에 대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

30) 교육부 교육시설과-6051(2018.05.18.)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 가이드라인 알림.

2.1.2 작업범위 및 집행시기 결정

- 학교 석면 해체·제거는 학교 단위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건물 단위로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작업범위에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M-bar) 등도 같이 포함하여 해체·제거한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석면자재는 지정폐기물로, 경량철골 등은 비닐 보양된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내어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 적정 공기 확보를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동시에 환경개선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석면 해체·제거 면적 규모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는 최소 작업기간 이상으로 방학일수 조정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31) 교육부-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 가이드라인

2.2.1 설계단계 주요 과업내용

- 냉·난방기, LED 조명 등을 설치할 경우 석면지도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감리인으로 하여금 무석면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조치하며, 과거 석면조사의 부실로 지도 작성에 오류가 있었다면 작업범위, 대가 등을 이에 맞게 조정한다.

업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57] 냉난방개선사업 석면관련 명시이월 내역

(단위: 천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1	목동초 본관 냉난방개선사업	356,920	12,121	344,799	96.6
2	목동초 서관 냉난방개선사업	178,320	6,101	172,219	96.6
3	태릉고 냉난방기개선	320,000	10,123	309,877	96.8
4	홍파초 벽체 방음시설 설치	200,000	6,224	193,776	96.9
5	성산초 느티관,목련관냉난방개선사업	300,720	8,675	292,045	97.1
6	은평초 신관냉난방개선사업	64,440	1,656	62,784	97.4
7	은평초 정보관냉난방개선사업	111,450	2,994	108,456	97.3
8	대성중 도서관동 냉난방개선사업	66,000		66,000	100.0
9	고명초 교사냉난방개선사업	366,830	8,867	356,412	97.2
10	신명초 소방시설개선	144,000		139,059	96.6
11	아주중 교사냉난방개선사업	541,270	9,540	526,768	97.3
12	가곡초 본관동냉난방개선	275,910		275,910	100.0
13	방화초 본관및후관동(옥내소화전) 소방시설개선	169,000		169,000	100.0
14	백석중 교사동냉난방개선	441,000		441,000	100.0
15	양동초 본관동냉난방개선	180,730		180,730	100.0
16	양동초 후관동냉난방개선	132,400		132,400	100.0
17	영도초 본관동내부창호교체	145,600		145,600	100.0
18	대모초 교사동 냉난방개선	244,800		243,652	99.5
19	서원초 교사동 냉난방개선	116,660		116,660	100.0
20	우암초 소방시설개선	92,000		92,000	100.0
21	신일중 냉난방개선	150,800		150,800	100.0
합계		4,598,850	66,301	4,519,947	98.3

□ [교육시설안전과] LED 렌탈 사업 변경 - 결산서 746쪽~771쪽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중 전기시설개선에 따른 LED 렌탈 사업은 예산현액 93억 9천 2백만원 중 6억 5천만원이 지출되고, 93.1%인

87억 4천 2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동 LED렌탈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³²⁾에서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LED 보급률을 100%의 무화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조명기구 교체에 필요한 예산(4,270억원)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은 교육재정 여건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2017년부터 종전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오던 LED 보급방식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렌탈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그러나 2018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보류 및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 제1호라목³³⁾에 따른 이의 제기 처리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과 석면관리 안전확보 방안 반영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었는바, 2018년 추진계획이었던 LED렌탈 사업은 교체 완료 연도계획을 기준으로 1년씩 연장됨에 따라 2018년 대상 물량이 명

32)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7-203호, 2017.12.28., 일부개정, 시행 2018.1.1.)

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구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표6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13	'14	'15	'17	'20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40%	50%	60%	80%	100%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 4. 생략

시이월된 것임.

- 그러나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거나 사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연도 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LED 렌탈을 통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는 사업초기부터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계약 입찰시 이의제기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예견될 수 있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명시이월한 것은 사전에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해당연도의 설치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한 것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시 예견되는 사업 지연 사유 등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58] LED 렌탈 사업 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내역

(단위: 천원, %)

연번	기관명	사업명	예산 현액	이월액	이월률
1	동부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350	1,350	100.0
2	동부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538실, 운영비선공제액)	88,900	88,900	100.0
3	동부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345실, 운영비선 공제액)	21,525	21,525	100.0
4	동부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75실, 운영비 선공제액)	21,181	15,500	73.2
5	동부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75실, 재정지원액)	413,759	299,850	72.5
6	동부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390실, 운영비 선공제액)	8,100	7,450	92.0
7	동부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390실, 재정지원액)	109,258	99,490	91.1
8	서부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 렌탈사업)	1,350	1,350	100.0
9	서부	공립학교 2017년 LED조명기구임차비(1,281실,운영비 선공제액)	73,113	73,113	100.0
10	서부	공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2,067실,운영비 선공제액)	38,513	38,513	100.0
11	서부	공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2,067실,재정지원액)	755,888	755,888	100.0
12	서부	사립학교 2017년 LED조명기구임차비(601실,운영비선공제액)	31,555	31,555	100.0

13	서부	사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1,200실,운영비선공제액)	13,479	13,479	100.0
14	서부	사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1,200실,재정지원액)	189,635	189,635	100.0
15	남부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350	1,350	100.0
16	남부	2017년 LED 조명기구 임차비(공립학교 2,251실, 운영비 선공제액)	127,034	127,034	100.0
17	남부	2017년 LED 조명기구 임차비(사립학교 78실, 운영비 선공제액)	5,004	5,004	100.0
18	남부	2018년 LED 조명기구 임차비(공립학교 1,763실, 운영비 선공제액)	26,356	26,356	100.0
19	남부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공립학교 763실, 재정지원액)	491,303	491,303	100.0
20	남부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사립학교 468실, 운영비선공제액)	4,560	4,560	100.0
21	남부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사립학교 468실, 재정지원액)	61,951	61,951	100.0
22	북부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350	1,350	100.0
23	북부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703실, 운영비 선공제액)-사립학교	44,789	44,789	100.0
24	북부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51실,재정지원액)-공립학교	437,485	437,485	100.0
25	북부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97실,운영비선공제액)-사립학교	22,605	22,605	100.0
26	북부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2,136실,운영비선공제액)-공립학교	127,407	127,407	100.0
27	북부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51실,운영비선공제액)-공립학교	22,034	22,034	100.0
28	북부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97실, 재정지원액)-사립학교	270,110	270,110	100.0
29	중부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350	1,350	100.0
30	중부	(공립)2017년 LED조명기구임차비(1,382실, 운영비 선공제액)	78,038	78,038	100.0
31	중부	(공립)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1,236실, 재정지원액)	431,614	431,614	100.0
32	중부	(공립)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1,236실, 운영비 선공제액)	23,539	23,539	100.0
33	중부	(사립)2017년 LED조명기구임차비(393실, 운영비 선공제액)	13,268	13,268	100.0
34	중부	(사립)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695실, 재정지원액)	132,574	132,574	100.0
35	중부	(사립)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695실,운영비 선공제액)	9,237	9,237	100.0
36	강동송파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350	1,350	100.0
37	강동송파	공립학교 2017년 LED조명기구임차비(1,837실,운영비 선공제액)	107,559	107,559	100.0
38	강동송파	공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2,563실,운영비선공제액)	48,781	36,135	74.1
39	강동송파	공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2,563실,재정지원액)	874,025	651,150	74.5
40	강동송파	사립학교 2017년 LED조명기구임차비(684실,운영비 선공제액)	33,402	33,402	100.0
41	강동송파	사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513실,운영비 선공제액)	5,826	2,730	46.9
42	강동송파	사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513실,재정지원액)	82,440	43,010	52.2
43	강서양천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350	1,350	100.0
44	강서양천	공립학교 2017년 LED조명기구임차비(1,787실,운영비 선공제액)	98,401	98,401	100.0
45	강서양천	공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2,578실,운영비 선공제액)	48,668	48,668	100.0
46	강서양천	공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2,578실,재정지원액)	917,400	917,400	100.0
47	강서양천	사립학교 2017년 LED조명기구임차비(2,578실,운영비선공제액)	29,965	29,965	100.0
48	강서양천	사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289실,운영비선공제액)	5,977	5,977	100.0
49	강서양천	사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289실,재정지원액)	81,984	81,984	100.0

50	강남서초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350	1,350	100.0
51	강남서초	공립학교 2017년 LED조명기구임차비(1,973실,운영비선공제액)	116,669	116,669	100.0
52	강남서초	공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운영비선공제액)	28,503	28,503	100.0
53	강남서초	공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재정지원액)	534,283	473,955	88.7
54	강남서초	사립학교 2017년 LED조명기구임차비(644실,운영비선공제액)	21,468	21,468	100.0
55	강남서초	사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운영비선공제액)	13,637	13,637	100.0
56	강남서초	사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재정지원액)	188,914	188,914	100.0
57	동작민악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350	1,350	100.0
58	동작민악	2017년 공립 LED조명기구임차비(운영비 선공제액)	96,213	96,213	100.0
59	동작민악	2017년 사립 LED조명기구임차비(운영비 선공제액)	9,110	9,110	100.0
60	동작민악	2018년 공립 LED조명기구임차비(운영비 선공제액)	29,483	7,335	24.9
61	동작민악	2018년 공립 LED조명기구임차비(재정지원액)	481,593	326,067	67.7
62	동작민악	2018년 사립 LED조명기구임차비(운영비 선공제액)	8,836	5,046	57.1
63	동작민악	2018년 사립 LED조명기구임차비(재정지원액)	116,632	116,632	100.0
64	성동광진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350	1,350	100.0
65	성동광진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773실, 운영비 선공제액)	101,302	101,302	100.0
66	성동광진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95실, 운영비 선공제액)	6,095	6,095	100.0
67	성동광진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87실, 운영비 선공제액)	24,330	24,330	100.0
68	성동광진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87실, 재정지원잔여액)	465,551	465,551	100.0
69	성북강북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LED렌탈사업)	1,350	1,350	100.0
70	성북강북	공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1,543실, 운영비 선공제액)	28,840	28,840	100.0
71	성북강북	공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1,543실,재정지원액)	516,135	516,135	100.0
72	성북강북	사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777실,운영비 선공제액)	9,568	9,568	100.0
73	성북강북	사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777실,재정지원액)	151,854	151,854	100.0
합계			9,392,108	8,742,261	93.1

□ [교육지원청]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 결산서 747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서부교육지원청	3,176,106	3,144,827	20,907	10,372	0.3
학교급식환경개선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 (선일여고)	3,176,106	3,144,827	20,907	10,372	0.3

- 2018회계연도 서부교육지원청의 “노후조리기구 및 확충”의 경우 예산 현액 31억 7천 6백만원 중 31억 4천 4백만원이 지출되고, 2천 1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명시이월된 2천 1백만원은 선일여고의 취반기 교체를 위한 예산 2천 1백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으로, 취반기와 같은 조리기구의 구입은 급식실 증축과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바, 급식실 증축을 위한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편성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은 사전에 조리기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은 사전 예산 확보를 위한 명시이월의 남용은 당해연도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이월제도를 통한 사전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59] 명시이월 내역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이월률
선일여고 취반기 교체	20,907	0	20,907	100.0

예산의 재이월 - 결산서 841~858쪽

(단위: 천원)

사업명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합계	125,877,370	245,215,399	36,673,044	238,490,791	76,880,244
학생생활지도지원	1,474,870	21,510	29,233	21,320	1,445,469
ICT활용교육지원	2,000,000	787,017	307,121	787,017	1,690,000
학력평가관리	163,300	0	71,977	0	61,710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68,860,700	151,119,790	20,767,827	145,770,230	36,179,876
학교급식환경개선	18,140,288	20,146,560	5,894,761	19,749,850	12,082,960
학교신증설	5,346,000	17,468,748	3,066,093	17,200,174	2,277,600
학교시설증개축	29,892,211	55,671,772	6,536,030	54,962,199	23,142,627

- 전년도 이월액 중 2018회계연도에 재이월된 사업은 “학생생활지도지원”, “ICT활용교육지원”, “학력평가관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등 총 6개 사업으로, 동 사업들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752억 9천 3백만원임.
- 먼저 재이월 사업 중 “학생생활지도지원”은 안전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등과 관련하여 학생 체험교육, 교사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관증축 사업 규모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의 지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미완료로 인해 재이월된 것임.
- 또한 그 밖의 대부분의 재이월 사업도 “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학교급식환경개선” 등과 같이 시설관련 사업들이 많았으며 재이월의 주요 사유는 방학기간에 의한 공사기간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임.
- 이와 같이 재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사업들의 경우 매년 반복적이고 관례적으로 재이월이 남발되고 있는바, 일반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기간의 상이 등 구조적인 사유는 차치하고라도

예산의 이월이 독립회계연도 원칙의 예외로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재차 이월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합

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매년 반복되는 재이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재이월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특별교부금의 명시이월 - 결산서 741쪽~771쪽

-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은 308건 1,835억 9천 8백만원이며, 이 중 특별교부금의 연도말 교부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된 것은 57건임.
- 특히 명시이월 중 대부분이 학교급식환경개선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설사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바, 학교의 시설사업은 학생들의 수업기간을 고려하여 대부분 방학중에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연도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사실상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기간 부족을 이유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60] 특별교부금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소 관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율
1	동부교육지원청	동원중 교사 및 식당동 바닥재 교체	649,000	649,000	100.0
2	동부교육지원청	신내초 창호 교체 및 방충망 설치	964,000	964,000	100.0
3	동부교육지원청	면동초 화장실 전면보수	1,384,000	1,384,000	100.0
4	서부교육지원청	진관초 체육관 지붕 및 바닥교체	586,000	566,731	96.7
5	서부교육지원청	소의초 교사동 냉난방 개선	589,000	589,000	100.0

연번	소 관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율
6	서부교육지원청	아현중 옥상 방수	627,000	611,386	97.5
7	서부교육지원청	신도초 방송선로 교체	229,000	218,766	95.5
8	서부교육지원청	광성고 운동장 보수	138,000	138,000	100.0
9	남부교육지원청	금천고 바닥 및 출입문 개선	514,000	514,000	100.0
10	남부교육지원청	서서울생활과학고 교사동 외벽개선	261,000	261,000	100.0
11	남부교육지원청	대영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	772,000	772,000	100.0
12	남부교육지원청	고척고 레슬링훈련장 증축	1,053,000	1,053,000	100.0
13	북부교육지원청	도봉중 교실환경개선	276,000	276,000	100.0
14	북부교육지원청	북서울중 운동장 개선	239,000	239,000	100.0
15	북부교육지원청	노원중 냉난방 개선	503,000	503,000	100.0
16	북부교육지원청	창동초 교사동 외벽 방수	300,000	300,000	100.0
17	북부교육지원청	상계제일중 교사동 외벽보수	283,000	283,000	100.0
18	북부교육지원청	청계초 교사동 중연창 및 출입문 교체	280,000	280,000	100.0
19	북부교육지원청	창동고 교사동 교실 출입문 교체	221,000	221,000	100.0
20	중부교육지원청	창신초 본관동 바닥개선	153,000	153,000	100.0
21	중부교육지원청	재동초 본관동 창호개선	259,000	259,000	100.0
22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예고 종합관 증축	1,200,000	1,200,000	100.0
2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신명중 본·별관동 옥상 방수	382,000	382,000	100.0
24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신천초 교사 후면 외부창호 교체	699,000	699,000	100.0
25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잠신초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000	425,000	100.0
26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아주초 교사동 화장실개선	878,000	878,000	100.0
27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동북고 냉난방개선	572,000	572,000	100.0
28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천동초 특별교실 증축	917,000	917,000	100.0
29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거원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354,000	1,354,000	100.0
30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경북여고 운동장 개선	481,000	481,000	100.0
31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백암고체육관개선	391,000	391,000	100.0
3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일초어린이놀이시설 개선	219,000	219,000	100.0
33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신중초테니스장 개선	331,000	331,000	100.0
34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경기여고체육관 개선	312,000	312,000	100.0
35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수서중교사동 냉난방 개선	382,000	382,000	100.0
36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수중본관동 냉난방개선	231,000	231,000	100.0
37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방현초교실 바닥개선	115,000	115,000	100.0
38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세곡중교사동 옥상 방수	319,000	319,000	100.0
39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원촌초교사동 승강기 설치	196,000	196,000	100.0
40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운중교사동 승강기 설치	196,000	196,000	100.0
41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연남고교실출입문 및 중연창 개선	324,000	324,000	100.0
4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양재고외부창호 개선	233,000	233,000	100.0
43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강남초 체육관 환경개선	456,000	456,000	100.0
44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신관중 외부환경 개선	104,000	104,000	100.0
45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정문학교 바닥 개선	562,000	562,000	100.0
46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광신중 화장실부분개선	328,000	328,000	100.0
47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보중 스탠드개선 및 차양 설치	292,000	292,000	100.0
48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경동초 체육관바닥및기타개선	134,000	134,000	100.0

연번	소 관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율
49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장안초 교사동창호개선	924,000	924,000	100.0
50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 개선	276,000	276,000	100.0
51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길음중 옥상 방수	271,000	271,000	100.0
52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인수중 교사동 옥상 방수	228,000	228,000	100.0
53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장곡초 본관 화장실 전면개선	1,429,000	1,429,000	100.0
54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개운중 냉난방 개선	462,000	462,000	100.0
55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암여중 냉난방개선	379,000	379,000	100.0
56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고명경영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132,000	125,400	95.0
57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영훈고 정보센터 체육관 바닥개선	105,000	105,000	100.0

Ⅲ.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주요내용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지출결정액이 66억 4천 8백만원 이고 지출액은 51억 5천 7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천 9백만원이고,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12억 5천 2백만원임.

2. 검토의견

가. 결산총괄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7억 8천만원으로 총 33건의 지출내역 이 있으며, 이 중 66억 4천 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1억 5천 7백만 원(77.6%)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천 9백만원, 집행잔 액은 지출결정액 대비 18.8%인 12억 5천 2백만원임.

나. 지출결산

1) 예비비 지출 내역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 제129조³⁴⁾ 및 「지방재정 법」 제43조³⁵⁾), 이와 같은 예비비는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34)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한 것으로 편의적인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천재지변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 2018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전년도(36억 4천 2백만원) 대비 30억 6백만원(82.5%) 증가하였는바, 제3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석면 잔재물 청소 등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비용과 상도유치원 및 대성고 학생 사고지원에 따른 비용이 주요 증가 원인임.

[표-61] 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회계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내역				
		건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2018	10,780	33	6,648	5,157	239	1,252
2017	7,730	29	3,642	3,339	150	153

- 예비비의 주요 사용 내역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23건(48억 6백만원, 93.2%),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 2건(7천 8백만원, 1.5%) 등 총 25건 48억 8천 4백만원(94.7%)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위험시설의 예방을 통한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의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평소에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은 미리 편성하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한편 ‘대성고 사안 지원’에 관한 예비비 지출은 보일러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행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지출인 것인바, 예비비 집행을 위한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 할 것임.

다만, 당초 예비비 지출을 위한 사용계획 수립시 장례비 등 유족지원을 위해 6천만원과 종합상황본부 운영비 1천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³⁶⁾, 이 중 장례비 등 유족지원에 실제 사용된 비용은 3백만원이며 나머지 5천 7백만원(94.8%)은 불용처리 되었음.

이와 같은 불용은 예산 편성 후 학생들에 대한 장례비 지급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법적 검토에 따른 것으로³⁷⁾, 당초 예비비 편성 단계에서 지출이 타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의 사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예비비의 불용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6) 대성고 사안관련 예비비 사용계획(예산담당관-9748,2018.12.19.)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사용내역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본청운영	운영비	종합상황본부 운영비	10,000	0	10,000
	여비	종합상황본부 여비	10,000	4,353	5,647
학생생활지도지원	운영비	장례비 등 유족지원	60,000	3,148	56,852
	학교회계전출금	심리상담치료지원	50,000	50,000	0

37) 김남권 기자, “김한근 강릉시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무책임한 사람’-강릉 팬션 사고 비용 부담 공언 해놓고 한푼도 지원안해”-서울시교육청“선거법 위반”“, 오마이뉴스, 2019.1.19.일자 기사참조

[표-62]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 일부 목록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결정 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합계	5,157	239	1,252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18			01-17	여의도여고 급식용 보일러실 장비 및 배관 보수
	49		1	03-02	당산서중 변압기 교체
	219		5	03-02	관악고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설치
	442		124	03-07	겨울방학 석면 제거학교 추가 정밀청소비 지원
	47		11	03-22	용산공고 옥외소화배관 개선공사
	1,092		306	03-22	석면 잔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대책 (정밀청소 및 잔재물조사)
	322		80	03-26	공덕초 본관동4층, 옥상층 보수보강
	113			05-09	인헌초천장텍스전면교체및기타공사
	84		16	05-18	난우중 전기실 시설 복구비
	49		1	06-11	창덕여중 옹벽설치 및 담장교체 공사
	170		8	06-25	우이초 석축 보수공사
	75			08-30	한강미디어고 노후 승강기 교체
	19			09-03	창일중 소방배관 교체
	18			09-03	영신여고 하수관 보수
	1,635	239	543	09-05	제3종시설 안전점검
	20			10-11	신계초등학교 외벽 보수
	56		4	10-14	오산고등학교 담장보수
	45		5	11-01	난곡초등학교 낙석방지책 보수
	110		31	11-23	등마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71		5	09-07	상도유치원긴급지원(1차지원)
40		6	02-02	광희초 옥외급수배관 개선공사	
66			02-14	서울체고 수영장 및 다이빙장 저수조 교체	
46		1	02-14	서울명덕초 변압기 교체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35			04-20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30			12-20	상도유치원긴급지원(5차지원)
교육정책 기획관리	48		20	06-21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세부사업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결정 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법무관리	14			04-06	임용취소처분 취소 판결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
예산관리	44			09-13	상도유치원긴급지원(2차지원)
	34		5	09-17	상도유치원긴급지원(3차지원)
학교환경 위생관리	26			05-16	라돈초과학교(경희초) 라돈 저감시설 설치
	46		7	08-09	석면 재조사
학생상담 활동지원	16			11-14	상도유치원긴급지원(4차지원)
학생생활 지도지원	5		16	12-19	대성고 사안 지원
	53		57		

2) 예비비 지출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 교육시설안전과의 ‘제3종시설 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³⁸⁾에 해당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9월 5일 예비비 24억 1천 7백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이 중 2억 3천 1백만원(9.6%)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 이와 같은 예비비의 이월은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완료했으나 사업비를 회계출납기한내 집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기간 부족으로 지출 결정액 일부를 사고이월함에 따른 것임.

○ 동 사업과 같이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배정을 통해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3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없는 긴급한 사안일 경우 예비비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나,

상기의 사례와 같이 편성된 예비비에 대한 집행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 회계출납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기간 부족을 이유로 예비비를 이월한 것은 사전 관리 및 집행계획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인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유인 이월제도가 편의에 따라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표-63] 예비비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집행잔액	지출결정일자	예비비지출사유
학교설·교육환경개선	2,417	1,635	239	9.6	542	09-05	-교육부에서 '18.6.1. 모든공공시설물을 등급에 관계 없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18.6.28.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하였고 2018년하반기에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2,000여동 안전점검을 안전점검전문기관 등 대행하여 실시하기 위한 예산지원

[표-64] 예비비 불용 내역

소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동부	96	-	28	
서부	113	-	46	
남부	170	-	40	
북부	41	90	45	회계출납기한 촉박
중부	89	-	50	
강동송파	118	-	47	
강서양천	-	149	29	용역기간 촉박
강남서초	140	-	29	
동작관악	117	-	41	
성동광진	93	-	31	
성북강북	101	-	26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	42	-	10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2,3과)	515	-	118	
교육시설안전과	-	-	2	집행잔액
합계	1,635	239	542	

3) 장애학생 배정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구조적 한계

- 남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3월 2일 예비비 2억 2천 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동 예비비의 지출은 남부교육지원청 산하 관악고에 2018년도 신입생으로 지체장애학생이 배정됨에 따라 승강기 및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는 부합한다 하겠음.
- 다만 이와 같은 장애학생의 배정 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불비로 인한 예비비의 지출은 학생 배정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장애학생 배정의 구조적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상시적으로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음.

IV.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결산 승인안

1.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52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78억 8천 9백만원보다 274억 2백만원(153.2%) 증가됨.

[표-65] 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감율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2018	17,889	27,402	28,369	967	45,291	153.2
2017	5,928	11,962	12,006	44	17,889	201.8

2. 검토의견

가.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 2018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79억 5천 8백만원과 이자수입 4억 1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178억 8

천 9백만원을 포함한 462억 5천 8백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9억 6천 1백만원과 시설부대비 6백만원, 예치금 430억 3천 9백만원 등 440억 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5천 2백만원임.

나. 수입결산

- 2018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수입액은 462억 5천 8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17억 6천 4백만원(3.8%) 감소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79억 5천 8백만원, 이자수입 4억 1천 1백만원 및 예치금 회수 178억 8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기금결산을 살펴보면, 수입액 중 전입금은 수입계획보다 19억 7천 7백만원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전입금의 감소는 은평구 수색6,7구역 재건축사업의 지연에 따른 토지 미처분 및 광진구 노유초 부지의 유상이관이 지연됨에 따른 것인바,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66] 기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 자원	수입계획 (A)	적립액 (B)	증감액 (B-A)	주요 증감사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9,935	27,958	△1,977	수색6, 7구역 재건축사업 지연 등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	333	411	78	정기예금이율 상향조정 및 운용금액 증가
계	30,268	28,369	△1,899	

다. 지출결산

- 2018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지출액은 440억 6백만원으로 지출계획액 대비 40억 1천 6백만원(9.1%) 감소하였고, 설계비 9억 6천 1백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 및 예치금 430억 3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출계획액 480억 2천 2백만원의 4.7%인 22억 5천 2백만원으로, 설계비 16억 6천 2백만원과 감리비 5억 9백만원으로 구성되는바, 모두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
- 따라서 2018회계연도 기금의 지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4조³⁹⁾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동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예치금에 편성되어 2019년도 기금의 수입으로 편성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 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67] 신청사 건립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	내역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설계비	2,652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216	216	0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	100	100	0	
		교통영향평가용역	157	0	157	준공 시기 미도래

3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신청사 설계용역(1차)	2,150	645	1,505	준공 시기 미도래
		소계	2,623	961	1,662	
감리비	590	신청사 건설사업관리 용역(1차)	590	0	590	준공 시기 미도래
시설 부대비	50	신청사 건설사업관리 용역(1차) 조달청 계약수수료	6	6	0	
계	3,292		3,219	967	2,252	

[표-68] 기금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이월액	계약기간
교통영향평가용역	157	2018. 9. 17.~2019. 3. 11.
신청사 설계용역(1차)	1,505	2018. 9. 27.~2019. 2. 23.
신청사 건설사업관리용역(1차)	590	2018. 10. 25.~2019. 11. 18.
합계	2,252	

[표-69] 신청사 추진 경과

일자	추진경과
2009. 4. 2.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구, 수도여고 부지로 청사이전 추진 결정)
2013. 8. 9.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2017. 3. 9.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보 제3398호)
2017. 6. 30.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이전 종합계획 수립
2017. 9. 1.	신청사 건립공사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결정
2017. 12. 15.	신청사 공간 건축자문관 위촉
2018. 4. 2.	신청사 건립 세부 추진 계획 수립
2018. 4. 12.	설계공모 공고
2018. 7. 16.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2018. 9. 17.	교통영향평가용역 계약(6개월, 2018. 9. 17.~2019. 3. 15.)
2018. 9. 27.	설계용역 계약 (기본.실시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38개월, 2018. 9. 27.~2021. 11. 9.)
2018. 10. 24.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40개월, 2018. 10. 25.~2022. 2. 5.)

V.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1.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6억 8천 6백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58억 6천 9백만원 및 당해연도 사용액 78억 9천 7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9%(20억 2천 8백만원) 감소한 86억 5천 8백만원임.

[표-70]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조성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2018	10,686	△2,028	5,869	7,897	8,658
2017	9,691	995	7,966	6,971	10,686
2016	10,029	△338	5,970	6,308	9,691

2. 검토의견

가. 기금결산 총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40)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41)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

4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리·운용하는 기금임

- 2018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 106억 8천 6백만원보다 20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한 86억 5천 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165억 5천 5백만원임.

[표-71] 공제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계 획				
항 목	계획액 ①	결산액 ②	증 감(②-①)		항 목	계획액 ③	결산액 ④	증 감 (④-③)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6,021	16,555	534	103.3	합 계	16,021	16,555	534	103.3
전입금	5,452	5,518	66	101.2	비용자성 사업비	7,018	6,601	△417	94.1
보조금	22	22	0	10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1,071	944	△127	88.1
예치금	10,185	10,686	501	104.9	기본경비 (구 물건비)	476	352	△124	73.9
이자 수입	192	167	△25	87.0	예치금 (차기이월 금)	7,456	8,658	1,202	116.1
기타 수입	170	162	△8	95.3					

나. 수입결산

-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수납액은 165억 5천 5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5억 3천 4백만원(3.3%)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7년 예치금 106억 8천 6백만원과 2018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58억 6천 9백만원으로 구성됨.
-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계획액 대비 3천 3백만원(0.6%) 증

4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 공제회 : 같은 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가한 58억 6천 9백만원으로, 공제료 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6천 6백만원(1.2%) 증가한 55억 1천 8백만원⁴²⁾, 보조금은 수입계획액과 동일한 2억 2천만원, 이자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2천 5백만원(13.0%) 감소한 1억 6천 7백만원이며, 기타 수입은 소방수익금이 수입계획액과 동일한 반면 학교폭력구상금은 8백만원(16.0%) 감소한 4천 2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8백만원(4.7%) 감소한 1억 6천 2백만원임.

[표-72]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입 계획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2017년도 수입액	
합 계		16,021	16,051	16,555	16,555	103.1	17,657	
소 계		5,452	5,452	5,518	5,518	101.2	5,776	
전입금	공제 료 수입	유치원	163	163	165	165	101.2	165
		초등학교	1,329	1,329	1,446	1,446	108.8	1,444
		중학교	1,464	1,464	1,499	1,499	102.4	1,560
		고등학교	2,367	2,367	2,288	2,288	96.7	2,479
		기타학교	129	129	120	120	93.0	128
	교육금고협력 사업지원금		0	0	0	0	0	0
소 계		22	22	22	22	100.0	1,857	
보조금	공제급여 지원금	0	0	0	0	0	1,672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지원금	22	22	22	22	100.0	18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지원금	0	0	0	0	0	167	
소 계		192	192	167	167	87.0	149	
이자 수입	이자수입	192	192	167	167	87.0	149	
소 계		170	170	162	162	95.3	184	

42) 공제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서 납부하였으나, 학교별 개별 납부에 따른 학교업무의 과중 및 납부절차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인해 금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기타 수입	사업수익금(소방)	120	120	120	120	100.0	120
	학교폭력구상금	50	50	42	42	84.0	64
소 계		10,185	10,215	10,686	10,686	104.6	9,691
전년도 이월금 (사고 등)	공제사업이월금	8,644	8,674	8,916	8,916	102.8	8,084
	상담지원이월금	0	0	162	162	0	0
	학교폭력이월금	1,541	1,541	1,608	1,608	104.3	1,607

○ 한편 2018년도 기금조성액 중 전입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공제료가 인상되었음에도⁴³⁾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억 5천 8백만원(4.5%) 감소한 55억 1천 8백만원임.

○ 또한 보조금은 교육청의 ‘공제급여 지원’ 사업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폐지·중단됨에 따라 수입이 전년 대비 18억 3천 9백만원(99.0%)이 감소한 2천 2백만원임.

- 당초 ‘공제급여 지원’은 공제급여 중 고액의 장해 및 유족급여 지원 사업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며,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은 2017년도 사업실적이 미비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의 지원 중단을 요청함에 따른 것임.

○ 이와 같은 수입액의 감소는 이미 예견된 결과로서 공제회 기금은 구조적으로 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이 소방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 매우 한정적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제회 기금은 공제료 단가 인상 및 보조금의

43)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1인당 공제료, 교육부고시 제2017-283호)

(단위 : 원)

회계연도	유	초	중	고	평균
2018	1,950	3,390	6,890	8,550	5,195
2017	1,940	3,370	6,840	8,510	5,165
2016	1,940	3,160	6,360	8,020	4,870

지원 등 외부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해마다 기금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수년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제회 기금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을 조속히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73] 기금 수입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증 감	증감율	주요 증감 사유	
수입	소계	5,869	7,966	△2,097	△26.3	공제료 수입, 교육청의 지원금 감소	
	전입금						
	공제료수입	5,518	5,776	△258	△4.5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공제료 수입 감소	
	보조금	공제급여 지원금	0	1,672	△1,672	△100	지원금 없음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22	18	4	22.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금	0	167	△167	△100	2017년 교부받은 예산으로 현재까지 운영중
	이자수입	이자수입	167	149	18	12.1	장기금융상품 만기에 따른 예금이자 증가
	기타수입	소방수익금	120	120	0	0	-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42	64	△22	△34.4	회수금 감소	

다. 지출결산

- 동 기금의 지출액은 165억 5천 5백만원으로, 지출계획액 대비 5억 3천 4백만원(3.3%) 증가한 것임.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차기이월금 86억 5천 8백만원을 제외한 2018년도 지출액은 78억 9천 7백만원으로, 공제사업비 60억 5

천 2백만원, 예방사업비 4억 3천 2백만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비 7백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1천만원, 인건비 9억 4천 4백만원, 업무추진비 3천 3백만원, 일반운영비 3억 1천 9백만원 등임.

[표-74]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		지출 계 획 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이월액	2017년도 결산액	
합계		16,021	16,051	16,555	103.1	259	17,657	
비용 자 성 사 업 비	공 제 사 업 비	소계	6,059	6,059	6,052	99.9		5,747
		공제급여 (사고보상비)	5,883	5,883	5,879	99.9		5,344
		소송 및 의료자문료	146	146	146	100.0		140
		보상심사위원회	30	30	28	93.3		24
	예방사업비	678	708	432	61.0	259	159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비	160	160	7	4.4		5	
	학교폭력 피해지원	121	121	110	90.9		75	
인 건 비	인 건 비	1,071	1,071	944	88.1		870	
기 본 경 비	업무추진비	34	34	33	97.1		30	
	일반운영비	442	442	319	72.2		324	
차기이월금		7,456	7,456	8,658	116.1		10,686	

1) 공제사업비

- 공제급여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계획현액 58억 8천 3백만원 대

비 99.9%인 58억 7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공제급여 중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지출계획현액 대비 10억 5천 4백만원을 초과한 26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장해급여의 지급건수는 전년보다 4건이 감소한 41건이나, 장해에 대한 규정의 모호함에 따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보상금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 공제회는 장해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급여지급과 관련한 무분별한 급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75] 공제급여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지출 계획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지출액 증감	2017년 결산액	
합계		6,059	6,059	6,052	100	7	5,793	
공 제 급 여	사 고 보 상 비	소 계	5,883	5,883	5,879	100	4	5,344
		요양급여	4,059	4,059	3,268	81	791	3,621
		장해급여	1,054	1,054	2,611	248	△1,557	1,678
		간병급여	30	30	0	0	30	0
		유족급여	700	700	0	0	700	45
		위로금	40	40	0	0	40	0
	소 송 및 의 료 자 문 료	소 계	146	146	145	99	1	140
		의료자문등	20	20	17	85	3	11
		소송선임료등	126	126	128	102	△2	129
	보 상 심 사 위 원 회	소 계	30	30	28	93	2	23
		보상심사위원회	30	30	28	93	2	23

[표-76]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소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소송건수	공제급여 지급(청구)액					
		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소송완료	7	167	25	142	-	-	-
소송 중	16	736	-	736	-	-	-

2) 예방사업비

- 예방사업비는 지출계획액 6억 7천 8백원과 전년도 이월금 3천만 원⁴⁴⁾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 7억 8백만원 대비 61.0%인 4억 3천 2백만원이 지출되고, 2억 5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⁴⁵⁾.
- 사고이월된 예방사업비 2억 5천 9백만원은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⁴⁶⁾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5억원 중 시스템 완료 후 지급할 2차 잔금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예방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3) 학교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 학교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는 지출계획액 1억 6천만원 대비 4.4%인 7백만원을 지출하였는바,

44) 사고이월된 예방사업비는 '학교손상감시체계전산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의 2차 잔금 1천 5백만원과 '공제급여, 학교폭력사고 업무처리지침 개정 연구용역'의 2차 잔금 1천 5백만원임.

45) [지방기금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6) 현재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은 교사 및 학부모의 공제급여 청구시 별도 안내가 없어 오류와 안내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공제급여 청구가 미접수되거나 청구 접수건에 대한 보완, 반려 등의 처리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됨. 더욱이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사고와 손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한 학교손상감시체계와 연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것임.

동 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 예산을 교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상담 및 심리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어(2017년에는 1건, 2018년 3건) 그 실효성이 의문임.

- 다만 법적으로⁴⁷⁾ 상담지원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학교폭력피해지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및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한 것으로, 지출계획현액은 1억 2천 1백만원으로 이 중 90.9%인 1억 1천만원이 지출됨.
- 세부사업별로 심리상담 및 조언은 68건으로(지난해 43건) 지출계획 대비 9백만원이 증가한 5천 9백만원이 지출⁴⁸⁾되었으며, 치료 및 요양은 51건으로(지난해 25건)으로 지출계획 대비 2백만원 감소한 4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소송수임경비는 지출계획 대비 1천 8백만원이 감소한 3백만원이 지출되었는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4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시교육청 및 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의 예방과 함께 동 사업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피해지원의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77] 학교폭력피해지원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지출잔액
학교폭력 피해지원	소 계	121	110	90.9	11
	심리상담및조언	50	59	118.0	△9
	치료 및 요양	50	48	96.0	2
	소송수임경비	21	3	14.3	18

-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